

## 국가폭력 트라우마 경험에 대한 근거이론적 탐구\*

김 석 용<sup>1)</sup>      강 영 신<sup>†</sup>


본 연구는 국가폭력 피해자들의 경험에 대해 알아보고, 국가폭력 트라우마와 일반 트라우마의 차이를 밝히며, 국가폭력 트라우마 치유에 도움이 되는 요인을 알아보고자 하였다. 연구 참여자는 국가폭력 피해당사자와 가족으로 제주4·3사건 11명, 여수·순천10·19사건 11명, 5·18민주화운동 6명을 포함하여 총 28명을 대상으로 심층면담을 실시하였다. 면담 내용을 근거이론 방법으로 분석한 결과, 총 170개의 개념과 57개의 하위범주, 20개의 범주가 도출되었다. 중심현상은 국가폭력으로 발생한 직접적인 피해들이었으며, 여기에는 외상후 스트레스, 사회적 낙인, 공동체로부터의 고립, 사회·경제적 문제, 가족 해체 등이 있었다. 과정분석 결과, 참여자들의 경험은 '외상', '고립', '저항', '체념', '회복', '성장'의 총 6단계로 구분되었으며, 각 단계는 순차적, 상호적인 영향을 주고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구결과들을 중심으로 국가폭력 트라우마와 일반 트라우마와의 차이점과 공동체 지지 등의 사회·문화적 요인이 국가폭력 트라우마 치유에 중요한 요인임을 논의하였다. 또한 본 연구의 의의와 한계점, 그리고 후속 연구를 위한 제언을 제시하였다.

주요어 : 국가폭력 트라우마, 일반 트라우마, 공동체 트라우마, 근거이론

\* 본 논문은 김석용의 박사학위 논문의 일부를 수정/보완한 것임.

1) 심리건강연구소 소장

† 교신저자 : 전남대학교 심리학과 교수, (61186) 광주광역시 북구 용봉로 77, E-mail : [lavieenrose@jnu.ac.kr](mailto:lavieenrose@jnu.ac.kr)

 Copyright ©2024, The Korean Psychological Association of Culture and Social Issues  
This is an Open Access article distributed under the terms of the Creative Commons Attribution Non-Commercial License (<http://creativecommons.org/licenses/by-nc/4.0/>) which permits unrestricted non-commercial use, distribution, and reproduction in any medium, provided the original work is properly cited.

## 연구 필요성 및 목적

우리나라 현대사는 한국전쟁과 군사독재를 거치면서 민간인학살, 의문사, 고문 및 실종 등 수많은 국가폭력이 자행되어왔다. 국가폭력 당시의 권력자나 기관은 그들의 폭력 행위를 국가의 체제 유지라는 미명하에 합법적인 방식으로 포장하여 피해자들을 범법자로 만들었다. 또한 합법과 불법의 경계를 오가며 피해자들에게 사회적 낙인을 찍어 공동체로부터 고립시켜 그들 행위를 정당화 해왔다(김동준, 1997; 엄찬호, 2013; 이재승, 2003; 황석영, 1996).

국가폭력은 책임소재를 밝혀내기 어려우며, 피해사실을 입증하기 어렵다는 특징을 가지고 있는데, 이는 폭력을 저지른 자들과 그들을 비호하는 세력이 권력을 장악하는 동안 그들의 폭력 행위가 조직적으로 은폐되거나 축소되기 때문이다. 국가폭력은 과거의 억압된 기억들과 상실감, 그리고 자녀세대로 전이된 간접외상 등 다양한 문제들을 포함하고 있으며, 많은 심리적 외상 전문가들과 역사학자들은 국가폭력 문제해결의 첫 단계는 '진실규명'과 '책임자 처벌'에서 시작되고, 여기에는 정치, 문화를 비롯한 생태적 환경 등 사회구조적 요인이 개입하게 된다는 것에 동의하고 있다(김석웅, 2019; 김왕배, 2014; 이영재, 2010; 정호기, 2006).

사회구조적 요인이 개입되는 국가폭력 트라우마는 일반적인 PTSD 모델로 설명하기 어려운데, 이는 오랜 세월 트라우마가 반복적으로 활성화되면서 PTSD 증상뿐 아니라 다른 정신건강의학적 문제들(예: 불안장애, 우울장애, 수면장애, 알코올 의존, 신체화장애 등)이 발생하고, 사회·문화적인 요인들의 영향을 받아

재생산되고 변형되기 때문이다(변주나, 1996; 오수성 등, 2006).

국가폭력 PTSD는 일반 PTSD와 구별되는 특징들이 있으나, 대부분의 연구가 일반 PTSD를 밝히는 양적 척도를 사용하고 있어 피해자들의 현재 증상의 심각도만을 보여주는 한계를 가지고 있다. 이러한 진단적 구분은 피해자들 경험의 다양성을 보여주지 못해 국가폭력 피해자들에 나타나는 다양한 문제들을 해결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 따라서 국가폭력 트라우마 피해자들의 심리적 경험의 주관적 의미를 밝혀 이들에 대한 이해와 치유적 접근을 돕는 연구가 필요하다.

본 연구는 국가폭력 피해자와 유가족들의 생생한 언어를 통해 국가폭력 피해자들의 경험에 대해 알아보고, 국가폭력 트라우마와 일반 트라우마에서의 경험의 차이가 무엇인지를 밝히고자 하였다. 또한 국가폭력 트라우마 치유에 도움이 되는 요인에 대해서도 알아보았다. 세부 연구 문제는 다음과 같다.

- 1) 국가폭력 트라우마의 경험 과정은 어떠한가?
- 2) 국가폭력 트라우마와 일반 트라우마의 경험에는 어떠한 차이가 있는가?
- 3) 국가폭력 트라우마 치유에 도움이 되는 요인은 무엇인가?

## 이론적 배경

### 국가폭력

국가폭력(state violence)이란 국가 및 공권력에 의해 의도적으로 자행된 모든 폭력 행위를 말하며, 사회의 제집단·체계급·체계층에 대

하여 강압적 수단을 활용하여 억압하고 통제하는 행위를 말한다(조희연, 조현연, 2002). 또한 '법적절차를 거치지 않았으며, 입법과정에서 충분히 합의를 거치지 않은 법에 근거한 국가기관의 대 민간인 폭행·폭언·통제·감시, 사상 및 의사표현의 억제' 등을 지칭하는 개념이라고 할 수 있다. 여기에는 국가기구나 요원에 의해서 행해지는 행위, 공권력에 의한 직접적인 폭력행사, 독재정권 뿐 아니라 민주정부에서 행해지는 행위도 포함될 수 있으며, 국가가 직접 가해하지 않더라도 가해 상황을 묵인하고 방치하는 경우도 국가폭력의 또 다른 형태라고 할 수 있다(김동춘, 1997).

국가폭력에 의한 피해는 자연재해, 전쟁, 범죄, 성폭력 등과는 다르게 피해가 당사자뿐 아니라 그의 가족과 주변 사람들에게 장기적이고 복합적으로 발생하게 된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그리고 국민을 보호하고 안전을 지키는 주체인 국가가 폭력을 가함으로써 더 이상 안전하게 지낼 수 있는 안전지대가 없다는 고립감과 공포를 느끼게 되고, 가해자가 명백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처벌할 수 없다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 더욱이 국가가 피해자를 공산주의자, 반국가 범죄자로 규정하면서 불온한 인물로 취급하는 등 사건 자체의 피해뿐 아니라 반역자라는 범죄자로 낙인이 찍히는 2차 피해가 발생하기도 한다. 이러한 낙인의 결과로 피해자는 자신이 속해 있는 공동체로부터 따돌림과 불이익을 당하고, 사회로부터 고립되는 경험을 하게 된다(한홍구 등, 2012).

1945년 해방 이후 한국 현대사는 '국가폭력에 의한 인권 침해의 역사'였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불안정한 체제를 유지하기 위해 공포를 동원하고, 반공과 안보가 최상의 이념이었으며, 정권에 대한 반대행위는 범죄행위

가 되었다. 한국사회의 국가폭력은 노골적이고 극단적으로 드러났으며, 대표적인 국가폭력 사건으로는 제주4·3사건, 여수·순천10·19사건, 노근리학살사건, 나주부대사건, 거창양민학살사건, 인혁당사건, 재일동포 간첩조작사건, 5·18민주화운동, 삼청교육대, 용산참사 등이 있다(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2009).

제주4·3사건의 경우 1948년 4월부터 1954년 9월까지 사망자가 약 3만 명으로 추정되는데, 당시 제주도민 인구는 약 25만 명으로 전체 인구의 12.5%가 피해를 입었으며, 이러한 피해는 제주도 전역에 걸쳐 발생했다(제주특별자치도 광역정신건강증진센터, 2016).

여수·순천 10·19사건의 경우 인명피해가 약 5,530여 명(사망 3,392명, 중상 2,056명, 행방불명 82명)으로 알려졌으며, 제주4·3사건에 비해 피해가 적어 보이나, 1948년 10월부터 1949년 1월까지 단기간에 집중적으로 피해가 발생하였고, 수천 명의 부역 혐의자들을 적법한 절차 없이 짧은 기간에 빠른 속도로 처리하여 불과 3개월 만에 많은 피해자가 발생한 것이 제주4·3사건과의 차이점이다(여수지역사회연구소, 2012).

5·18민주화운동은 1980년 5월 18일부터 5월 27일까지 인명피해가 약 7,200여 명(사망 218명, 상이자 5,088명, 행방불명 363명, 기타 1,520명)으로 알려졌다. 2006년 5·18민주화운동 피해자 및 유가족 34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정신건강 실태조사 결과, 응답자의 55.8%가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를 겪고 있었으며, 신체화, 불안, 우울을 평가하는 척도의 점수가 일반인에 비해 2배 이상 높았다(오수성 등, 2006).

국가폭력의 유형에는 고문, 납치, 연행, 구

속, 감시, 시위에 대한 폭력진압, 집단수용 및 집단 희생, 정치테러, 노동운동 탄압 등이 있으며, 특히 고문은 국가폭력에서 드러나는 가장 심각한 폭력의 형태로 한 개인의 정체성과 신념을 파괴하고 변화시키는 인권 유린행위라고 할 수 있다. '나는 더 이상 고문받기 전의 내가 아니다'라는 어느 고문 피해자의 진술에서 폭력의 결과로 발생한 정체성 파괴의 심각성을 짐작해 볼 수 있다(박영주, 신행우, 2007).

### 트라우마와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

DSM-5(American Psychiatric Association, 2013)에서는 트라우마(trauma, 外傷)를 실제적이고 위협적인 죽음이나 심각한 질병, 성폭력, 폭행 등에 노출되거나, 목격한 경우, 혹은 친밀한 사람들에게 일어난 외상 사건을 알게 된 경우로 정의하였다. 트라우마는 사람으로서 존엄성과 고유한 정체성을 침해하는 경험이라고 할 수 있으며, 개인의 생존과 안전을 위협하는 심각한 사건이다(이홍석 등, 2015).

트라우마의 후유증은 시간이 경과 하면서 점차 호전되기도 하지만, 사건이 발생하기 이전의 수준으로 완전히 회복되는 것은 아니다. 개인차는 있지만 오랜 시간 동안 반복되고 지속되는 경우가 더 많다. 사건 당시의 충격과 공포가 마치 바로 여기에서 다시 일어나는 것처럼 재현되기도 하는데, 이를 재경험이라고 한다. 또한 한 개인의 충격적인 경험은 주변 사람들에게도 영향을 주게 되고, 공포와 불안이 공유되기도 하며, 반복적인 외상 경험의 활성화는 피해자의 심리적 문제를 더욱 복잡하고 심각하게 만들게 된다. 이와 더불어 특정 트라우마 경험(예: 국가폭력 트라우마)은 피해자의 자녀세대뿐 아니라 그 후세에까지

외상 경험이 전이되어 자손들에게도 유사한 증상들이 발견되기도 한다(오수성, 2013).

트라우마의 후유증은 크게 신체적 후유증, 심리적 후유증, 사회적 후유증으로 구분할 수 있다. 신체적 후유증은 직접적인 신체적 상해로 발생하는 것으로 국가폭력 피해자의 63% 이상이 만성적인 통증으로 심한 고통을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Amris, 2005). 이러한 신체적 후유증은 고문이나 폭행으로 주로 발생하며, 신체 조직의 손상, 근골격계 문제가 주가 되고, 피해 당시 적절한 치료를 받지 못하고 오랜 시간 방치된 결과이다(오수성 등, 2016).

심리적 후유증은 신체적 후유증에 비해서 더 복잡적이고 만성적인 양상을 보이며, 가장 대표적인 것은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이다(오수성 등, 2006).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는 외상 사건에 대한 악몽 및 침습적인 기억, 공포 및 불안감, 타인과 세상에 대한 불신, 과경계 및 자책감을 주 증상으로 한다. 특히 국가폭력 피해자의 경우 일반인에 비해 자살률이 약 6배 정도 더 높았고(오수성 등, 2006), PTSD 환자의 약 20%에서 자살을 시도한 것으로 보고되었다(정문용 등, 2010).

사회적 후유증은 사건 발생 이후 주변 사람들과의 관계, 사회의 태도나 해석, 정치적인 담론 등 다양한 변수들의 상호작용으로 만들어지는 것으로, 지속적이고 광범위한 특성을 가지고 있다(Kleinman, 1997). 국가폭력 피해자들은 사회적 낙인(예: '빨갱이', '빨갱이의 자식', '반란군의 자식')으로 인해 경제적인 어려움, 진로 선택의 제약 등의 문제를 경험하고, 공동체에 소속되지 못하고, 피해사실을 숨긴 채 살아야 하는 경우가 많았다(오수성 등, 2016).

이들이 경험한 트라우마는 주변 사람들에게 영향을 주고 후세대에까지 전이되기도 한다. 연좌제 · 신원조회 · 보호관찰 · 민간사찰 등의 제도적 폭력으로 부모세대의 트라우마가 자녀 세대에까지 이어지기도 했고, 피해자의 가족들은 피해당사자와 유사한 심리적 문제들을 가지고 있는 경우가 많았다(오수성 등, 2006; 김명희, 2014). 트라우마는 시간이 지남에 따라 사라지기보다는 잠재되어 있다가 유사한 자극에 의해 다시 활성화되고, 시공간을 초월하여 다음 세대로까지 전이되는 속성을 가지는 데 이를 트라우마의 세대 전이라고 한다(김왕배, 2014).

현 DSM 진단 체계에서는 외상의 피해자가 어떠한 사건을 경험하였는지 보다는 그 사건에 대한 공포와 두려움 또는 무력감을 느꼈는지, 얼마나 지속되었는지와 같은 주관적 반응이 진단의 전제 조건이 된다. 그러나 외상 사건과 그 심각성에 따라서 외상 사건을 경험한 사람들에게 미치는 영향은 각각 다르며, 특히 전쟁이나 학대, 고문, 성폭행과 같이 타인에 의해 의도적으로 발생한 사건의 경우 갑작스러운 사고나 자연재해와 같이 비의도적으로 발생한 사건과 비교하여 훨씬 더 복잡하고 다양한 심리적 후유증을 남긴다(Schiraldi, 2000). 이에 많은 연구자들은 일반적인 PTSD 진단기준을 다양한 외상 유형에 적용하는 것이 적절한지, 특히 재경험, 회피, 과각성과 같은 증상이 PTSD를 설명하는 최소한의 기준들이 될 수 있는가에 대한 의문을 제기하였다(Davidson & Foa, 1991; Kilpatrick & Resnick, 1992).

일반적인 PTSD의 진단은 단일한 사건 기준, 그리고 구체적인 사건의 종류나 내용은 제시하지 않은 채, 트라우마를 ‘생명에 위협이 될 정도의 사건’이라는 ‘결과’ 측면에서 정의 내

리는 한계를 가지고 있으며(이홍석 등, 2015), 이는 국가폭력 피해자들의 반복적인 외상 경험에서 나타나는 증상이나 심리적 문제들을 충분히 설명해 주지 못한다(김문선, 강문민서, 2017).

국가폭력은 폭력이 다시 발생할 것에 대한 공포로 인해 피해사실에 대해 ‘침묵’하게 되어 그 피해사실을 밝히기 어렵고, 사건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나 평가의 변화, 특별법 제정과 같은 제도의 변화에 따라 사건의 의미가 달라지는 사회적 과정을 반복하게 된다(김명희, 2014). 침묵은 국가폭력 사실에 대한 사회공동체의 침묵이라고 할 수 있으며, 이를 Danieli (2009)는 ‘공모된 침묵(conspiracy of silence)’이라고 표현했다. 이러한 공동체의 침묵은 그가 속한 공동체의 불신과 해체, 진실규명의 어려움, 가해자 처벌 등을 어렵게 하며, 피해자가 사회를 믿을 수 없고, 혼자 고립되고 소외되었다는 느낌을 갖게 만든다.

트라우마의 핵심은 ‘관계의 단절’과 ‘고립’의 사회화 과정에 있다. 외상의 본질은 개인과 주변의 사회적인 속성들을 고려한 연속적인 스펙트럼 속에서 이해되어야 한다(김명희, 2014; Alexander, 2007; Herman, 2012). 또한 국가폭력으로 인한 트라우마는 ‘사건 그 자체’에서만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사건의 의미가 사회적 담론이나 역사적 해석에 의해 재생산되는 사회적 과정에서 발생하며(Alexander, 2007), 트라우마를 유발하는 만성적 환경이 언제나 존재한다는 점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Herman, 2012).

## 연구 방법

## 연구 참여자

연구 참여자 선정은 근거이론의 ‘이론적 표본추출’을 따랐다. 이론적 표본추출은 연구자가 가지고 있는 연구에 대한 기본 개념에 근거하여 표본을 추출하는 것을 말하며, 개념의 속성에 영향을 주는 차원의 범위 및 다양한 조건을 탐색할 목적으로 행해진다(Schreiber & Stern, 2001; Strauss & Corbin, 1998). 표본추출은 자료를 수집하고 분석해 나감에 따라 연구 참여자의 행동과 과정, 외부와의 상호작용을 설명하는 체계적인 이론을 개발하기 위해 모든 범주가 포화(saturation) 될 때까지 진행된다(Draucker et al., 2007; Strauss & Corbin, 1998). 포화의 의미는 자료수집과 분석의 절차를 반복하여 분석 가능한 속성과 차원, 그리고 관계를 설명하는 데 충분하기 때문에 더 이상 새로운 자료수집이 필요하지 않다는 것을 의미하며, 이는 연구자의 주관적인 판단에 따른다(Creswell, 2015).

본 연구의 참여자는 제주4·3사건 피해자 및 유가족 11명, 여수·순천10·19사건 피해자 및 유가족 11명, 5·18민주화운동 피해자 및 유가족 6명으로 총 28명이었다.

연구 참여자들의 인구통계학적 특성은 표 1과 같다. 이들 모두 국가폭력 피해자, 피해자의 가족이었으며, 여성이 8명(28.57%), 남성이 20명(71.42%)이었고, 50대 1명, 60대 2명, 70대 17명, 80대 6명, 90대 2명이었다. 연구 참여자들의 평균 연령은 75.89세였다.

## 자료수집 절차 및 방법

참여자들이 고령임을 고려하여 면담에 들어가기 전 한국형 간이정신상태검사를 실시하였

다. 간이정신상태검사는 Folstein M. 과 동료들(1975)이 제작하였으며, 인지 손상 선별도구로 가장 널리 사용되어 왔다. 본 연구에서는 권용철과 박종한(1989)이 번안한 것을 사용하였으며, 0~17점을 ‘심도의 인지손상’, 18~23점을 ‘경미한 인지손상’, 24~30점을 ‘인지손상 없음’으로 분류하였다. 인지장애 여부를 1차적으로 감별할 수 있는 점수는 23~24점이다(이은경, 이현수, 2007). 간이정신상태검사 점수가 24점 미만인 경우, 수집된 자료의 신뢰성에 영향을 줄 수 있다고 판단되어, 참여 대상에서 배제하도록 하였다. 그러나 본 연구에 참여한 참여자들 모두가 24점 이상을 받아 연구 대상에서 배제된 사례는 없었다.

심층면담은 참여자들의 동의하에 자택, 유족회 사무실, 지자체 회의실 등에서 실시하였으며, 외부의 소음이 차단되고 쾌적한 공간으로 면담시간 동안 불편함을 최소화하고자 하였다. 면담시간은 평균 53분가량이었으며, 최장 면담시간은 약 90분이었고, 최단 면담시간은 약 40분이었다. 질적 연구는 연구 참여자들의 삶의 경험이 들어 있는 그들의 진술을 통해 자료를 수집하고 분석하게 되므로 연구자는 연구 참여자들에 대한 세심한 윤리적 고려가 필요하다. 연구자는 연구 윤리를 철저히 준수하고, 연구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문제들에 효율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생명윤리심의위원회에서 연구 승인을 받아 연구를 진행하였다(IRB No. 1040198-180620-HR-061-02).

면담은 반구조화된 방식으로 진행되었고, 질문의 내용은 참여자들의 반응에 최대한 개입하지 않는 범위에서 토대 질문만을 하였다. 면담 질문 내용의 예시를 표 2에 제시하였다.

표 1. 연구참여자의 인구통계학적 특성

표기	성별	현재연령	사건당시연령	최종학력	피해 내용	관련사건
G1	여	61세	22세	전문대졸	부상자의 배우자	5·18민주화운동
G2	여	86세	47세	초졸	자녀 사망	
G3	남	69세	30세	중교 중퇴	구속 및 부상	
G4	남	82세	43세	중졸	자녀 사망	
G5	여	81세	42세	초교 중퇴	자녀 사망	
G6	여	78세	39세	초교 중퇴	자녀 사망	
J1	남	91세	20세	중졸	피해 당사자	제주4·3사건
J2	남	75세	4세	중졸	피해 당사자/가족사망	
J3	남	50세	출생전	대졸	가족 사망	
J4	남	90세	19세	중졸	피해 당사자	
J5	남	72세	1세	중졸	가족 사망	
J6	남	73세	2세	대졸	가족 사망	
J7	남	73세	2세	고졸	가족 사망	
J8	남	75세	4세	중졸	가족 사망	
J9	남	72세	1세	고졸	가족 사망	
J10	남	72세	1세	중졸	가족 사망	
J11	남	73세	2세	중졸	가족 사망	
Y1	여	78세	7세	초졸	가족 사망	여수·순천 10·19사건
Y2	여	73세	2세	초졸	가족 사망	
Y3	남	77세	6세	초교 중퇴	가족 사망	
Y4	남	72세	1세	초졸	가족 사망	
Y5	여	72세	1세	초교 중퇴	가족 사망	
Y6	여	73세	2세	대졸	가족 사망	
Y7	남	83세	12세	고졸	가족 사망	
Y8	남	86세	15세	무학	피해 당사자	
Y9	남	82세	11세	고졸	가족 사망	
Y10	남	78세	7세	대졸	가족 사망	
Y11	남	78세	7세	고졸	가족 사망	

표 2. 면담 질문 예시

질문내용 예시
귀하가 경험한 사건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당시에 있었던 어려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사건 이후에 불이익이나 피해가 지속되었습니까?
사건이 귀하에게 어떤 영향을 주었습니까?
이 사건을 극복하는 데 도움이 되었던 것이 있습니까?
최근 주변 사람들의 변화가 있었습니까?
치유와 회복을 위해 귀하가 바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 자료 분석

근거이론(Grounded Theory)은 Glaser와 Strauss가 1967년에 창안하였으며, 인간의 사회적, 심리적, 구조적 현상(기본적 사회 과정, 기본적 사회·심리적 과정, 기본적 사회·구조 과정)을 파악하는 데 유용하다(Morse, 2003). 근거이론은 인간의 행위와 상호작용에 대한 의미 있는 통찰을 제공해 줄 수 있으며(Strauss & Corbin, 1990), 인간의 행위와 상호작용을 둘러싼 과정에 대해 추상적 개념화와 이론화를 시도하여 사회적 실재에 대한 이론을 생성할 수 있는 유용한 질적 연구방법으로 평가받고 있다(Barney et al., 2011; Stern & Covan, 2003; Strauss & Corbin, 1998).

수집된 자료의 분석은 2단계로 진행되는데, 1단계는 개방코딩(open coding)의 과정으로 원 자료를 개념화하고 범주화하는 단계로서 문장의 의미를 해석하고 그 현상에 대한 개념을 명명한다. 2단계는 축코딩(axial coding) 과정으로 분석된 범주들 간의 관계를 더 포괄적으로 설명하기 위해 근거이론의 패러다임 모형(인과적 조건, 중심현상, 맥락적 조건, 중재적 조건, 그리고 상호작용 전략과 결과)에 의해 재

배치된다(Strauss & Corbin, 1998).

### 분석의 신뢰성 및 타당성 확보

분석의 신뢰성과 타당성을 확보하기 위해 Linclon과 Guba(1985)가 제시한 평가 기준(사실적 가치, 적용 가능성, 일관성)에 따라 다음과 같은 측면들을 고려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연구의 사실적 가치, 적용 가능성, 일관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질적 연구 경험이 있는 심리학 박사학위 소지자 2명, 심리학 석사학위 소지자 1명에게 분석과정에 대한 자문을 구하였으며, 개방코딩에서 개념을 도출할 때는 연구자를 포함하여 3인의 의견을 반영하여 어색하거나 부족한 개념을 삭제 및 보충하였다.

### 연구 결과

#### 개방코딩: 국가폭력 피해자들의 경험에 대한 개념과 범주들

심층 면접을 통해 수집된 자료들을 진술의 맥락 등을 고려하여 의미 단위로 쪼개고 지속



표 3. 개방코딩 결과: 근거자료의 범주화

개념	하위범주	범주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공권력에 의한 폭력 경험</li> <li>• 목숨이 위협당하는 피해를 봄</li> <li>• 총상을 입음</li> <li>• 고문을 당함</li> </ul>	공권력에 의해 자신이 폭력을 경험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억울하게 가족이 몰살당함</li> <li>• 자식이 억울하게 죽음</li> <li>• 자녀의 시신을 목격함</li> <li>• 가족의 시신을 목격함</li> <li>• 가족이 연행되어 행방불명이 됨</li> <li>• 가족의 상해를 지켜봄</li> <li>• 어머니가 구타를 당함</li> <li>• 가족이 연행되어 구타를 당함</li> <li>• 어머니가 성적인 괴롭힘을 당함</li> </ul>	국가폭력으로 가족이 피해를 당함	1. 국가폭력으로 인해 자신 및 가족이 물리적 폭력을 당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강제로 부역을 하게 됨</li> <li>• 공권력에 의해 통제를 받음</li> <li>• 사회적 활동이 제약받음</li> <li>• 계속된 감시를 받음</li> <li>• 억울한 진술을 강요당함</li> <li>• 국가가 폭력 사실을 조직적으로 은폐함</li> </ul>	공권력에 의해 지속적 감시 및 통제를 당함	2. 국가폭력으로 인해 개인과 가족이 지속적으로 심리적·제도적 피해를 입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충격으로 인해 가족원이 사망함</li> <li>• 가족 모두 트라우마를 경험함</li> <li>• 가족이 정신건강의학과 치료를 받음</li> <li>• 연좌제로 가족 전체가 피해를 받음</li> </ul>	국가폭력이 가족 전체에게 심리적·제도적 피해를 줌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국가폭력은 개인만의 문제가 아님</li> <li>• 마을구성원들의 대부분이 피해자가 됨</li> <li>• 공동체 전체의 폭력 경험이 공유됨</li> <li>• 공동체 내 국가폭력 장면을 목격함</li> </ul>	국가폭력에 의한 공동체 피해를 공유함	3. 국가폭력에 의한 공동체 피해를 공유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국가폭력을 다시 경험할 것이 두려워 거주지를 옮겼음</li> <li>• 국가폭력이 두려워 시신을 몰래 수습함</li> </ul>	국가폭력 재경험에 대한 두려움	4. 국가폭력에 대한 두려움으로 주변인이 됨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국가에 대한 두려움이 생겨 도망을 다님</li> <li>• 제도권에 소속되지 못함</li> </ul>	국가폭력에 대한 두려움으로 제도권에 소속되지 못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국가의 부당한 폭력에 억울함을 느꼈음</li> <li>• 공권력이나 제도에 대해 부정적인 감정이 생김</li> <li>• 정부를 믿지 못함</li> </ul>	국가와 제도에 대한 불신이 생겼음	5. 국가 제도를 포함한 세상에 대한 신뢰를 잃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세상에 대한 신뢰가 깨짐</li> <li>• 다른 사람을 믿지 못하게 됨</li> </ul>	세상과 타인에 대한 신뢰를 잃음	

표 3. 개방코딩 결과: 근거자료의 범주화

(계속 1)

개념	하위범주	범주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국가폭력 피해를 당시에는 인지하지 못함</li> <li>• 오래전 사건으로 증거가 불충분함</li> <li>• 부적절한 절차에 의해 피해사실이 입증되지 못함</li> <li>• 보상을 받지 못한 것이 내 책임이라고 느낌</li> <li>• 피해신청이 기각됨</li> <li>• 피해에 대한 배상이 없었음</li> </ul>	<p>국가폭력 피해를 당시에는 인지하지 못함</p> <p>피해사실을 증명하지 못해 억울했음</p>	<p>6. 피해자임에도 불구하고 피해사실을 제대로 인식하거나 인정받지 못함</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가족 간 비난을 함</li> <li>• 가족 간 비밀이 생김</li> <li>• 가족 구성원의 존재가 사라짐</li> <li>• 아버지 사망 후 어머니가 쫓겨났음</li> <li>• 가정이 붕괴박산이 났음</li> <li>• 가족이 붕괴되어 어린 시절 제대로 양육을 못 받음</li> <li>• 제대로 된 돌봄을 받지 못함</li> </ul>	<p>가족 간의 갈등이 발생하였음</p> <p>국가폭력으로 가족이 붕괴되어 양육·성장애 필요한 기회를 박탈당했음</p>	<p>7. 국가폭력으로 인해 가족이 해체되고 붕괴됨</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집이 불타서 전 재산이 사라짐</li> <li>• 경제적 지위가 낮아짐</li> <li>• 학교를 다닐 수 없었음</li> <li>• 원하는 직업을 갖지 못했음</li> <li>• 공무원이 될 수 없었음</li> <li>• 자식이 원하는 직업을 갖지 못했음</li> </ul>	<p>국가폭력으로 인해 사회·경제적 지위가 낮아짐</p> <p>국가폭력으로 학업과 진로 선택에 제약이 생김</p>	<p>8. 국가폭력으로 인해 전반적인 삶의 제약이 생겨 사회·경제적 지위가 낮아짐</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국가폭력으로 인생이 완전히 바뀌었음</li> <li>• 삶의 의미와 목표가 없어짐</li> <li>• 적절한 치료를 받지 못했음</li> <li>• 정상적인 치료를 받지 못함</li> <li>• 심리적인 문제에 대해 도움을 받지 못함</li> <li>• 사건의 후유증이 오래 지속됨</li> <li>• 신체적 후유증이 생김</li> <li>• 신체적 후유증으로 치료를 장기간 받음</li> <li>• 고문으로 인한 신체적 후유증 때문에 직장생활을 유지하지 못함</li> </ul>	<p>국가폭력이 삶의 목표와 의미를 앗아감</p> <p>국가폭력으로 인해 생긴 신체적·심리적 문제에 대해 적절한 치료나 도움을 받지 못함</p> <p>신체적 후유증이 지속되었음</p>	<p>9. 국가폭력이 삶의 목표와 의미를 앗아감</p> <p>10. 적절히 치료받지 못해 신체적·심리적 후유증이 지속됨</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과거 사건에 대한 생생한 기억이 지속됨</li> <li>• 과거 사건이 떠올라 공포가 지속됨</li> <li>• 과각성 상태가 유지됨</li> <li>• 사건과 관련된 꿈을 꿈</li> <li>• 과거 사건 반추로 인한 수면의 어려움</li> <li>• 과거 사건에 대한 회피</li> <li>• 신체적 통증은 사라지나 심리적 고통은 지속됨</li> <li>• 기념일 효과가 생김</li> <li>• 자살생각이 들</li> <li>• 자살시도를 함</li> </ul>	<p>외상후 스트레스 증상을 경험함</p> <p>자살생각이 지속되고 자살시도를 하였음</p>	<p>11. 국가폭력으로 외상후 스트레스 증상에 시달림</p>

표 3. 개방코딩 결과: 근거자료의 범주화

(계속 2)

개념	하위범주	범주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빨갱이의 후손이라는 낙인이 생김</li> <li>• 국가폭력의 오명이 후대에게 빛이 됨</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낙인으로 인해 자녀세대가 고통을 받았음</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평생 동안 낙인에서 벗어나지 못함</li> <li>• 빨갱이와 결혼해서는 안 된다며 약혼자와 결혼이 파기됨</li> <li>• 빨갱이라는 시선 때문에 거주지를 옮김</li> <li>• 낙인으로 인한 고통이 심했음</li> <li>• 주변의 낙인이 두려웠음</li> <li>• 죄인의 가족이라는 낙인에서 벗어나고 싶음</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낙인으로 인한 고통이 심했음</li> </ul>	12. 국가폭력으로 사회적 낙인이 발생하여 개인과 가족이 고통받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자녀들이 여전히 심리적 고통을 받고 있음</li> <li>• 국가폭력의 고통이 대물림 되었음</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국가폭력의 고통이 대물림 되고 있음</li> </ul>	13. 국가폭력 고통이 후대에도 전이됨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자녀들도 치유가 필요함</li> <li>• 가족 전체가 치유작업에 참여할 필요가 있음</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자녀세대의 트라우마도 치유가 필요함</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치유의 방법으로서 글쓰기가 도움이 됨</li> <li>• 숨겨야만 했던 이야기들을 표현하는 것이 도움이 됨</li> <li>• 종교가 치유에 도움이 되었음</li> <li>• 심리학 공부가 치유에 도움이 되었음</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나의 경험을 표현하는 것이 치유에 도움이 되었음</li> <li>종교가 치유에 도움이 되었음</li> <li>심리학 공부가 치유에 도움이 되었음</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운동이나 취미생활이 치유에 도움이 되었음</li> <li>• 국가폭력에 타협하지 않음</li> <li>• 사건 왜곡 시도에 저항을 함</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운동이나 취미생활이 치유에 도움이 되었음</li> <li>내 행위의 떳떳함이 치유에 도움이 되었음</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제도권에 소속되는 것이 생존에 필요하다고 생각함</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제도권에 소속되는 것이 생존에 필요하다고 생각함</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친척의 도움으로 더 큰 폭력 피해를 입지 않았음</li> <li>• 주변 도움으로 진실규명을 신청하게 됨</li> <li>• 가족의 지지가 치유에 도움이 되었음</li> <li>• 주변의 지지가 치유에 도움이 되었음</li> <li>• 존중받는 경험이 치유에 도움이 됨</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가족과 주변의 도움으로 피해가 악화되지 않고 치유가 됨</li> </ul>	14. 국가폭력 치유에 도움이 되는 요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공동체 모임에 열심히 참여하는 것이 도움이 됨</li> <li>• 고통이 공유됨을 느꼈음</li> <li>• 고통의 공유가 치유에 도움이 됨</li> <li>• 자신의 상실경험을 통해 타인의 국가폭력 경험을 더 잘 이해하게 됨</li> <li>• 사회적 공동체를 형성하는 것이 도움이 됨</li> <li>• 가족과 이웃도 트라우마 치유가 필요하다고 생각함</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고통의 공유가 치유에 도움이 되었음</li> </ul>	

표 3. 개방코딩 결과: 근거자료의 범주화

(계속 3)

개념	하위범주	범주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유족회가 공식적인 단체로 인정받음</li> <li>• 국가수장의 태도나 입장에 따라 긍정적 변화가 생김</li> <li>• 국가수장의 위로가 도움이 되었음</li> <li>• 사회적 인식의 변화가 있음</li> </ul>	<p>사회적 인식의 변화가 치유에 도움이 되었음</p>	14. 국가폭력 치유에 도움이 되는 요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국가폭력 전문치유기관이 트라우마 치유에 도움이 됨</li> <li>• 신체적 치료비 지원이 도움이 됨</li> <li>• 지자체의 도움이 감사함</li> <li>• 지원이 불만족스럽지만 수용할 수밖에 없었음</li> </ul>	<p>국가폭력 전문치유기관이 트라우마 치유에 도움이 됨</p> <p>지자체의 지원이 충분하지는 않았으나, 어느 정도 도움이 되었음</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생존을 우선시하느라 심리적 건강을 돌볼 수 없었음</li> <li>• 생계를 돌보느라 유족회 활동을 제대로 못함</li> <li>• 주변에 도움을 받을 사람이 없었음</li> <li>• 피해사실을 털어놓는 것에 대해 안정감을 느끼지 못했음</li> <li>• 종교가 치유에 도움이 되지 않았음</li> </ul>	<p>생계 때문에 국가폭력에 관심을 두기 어려웠음</p> <p>도움을 청하기에 믿을만한 사람이 없었음</p> <p>종교가 치유에 도움이 되지 않았음</p>	15. 국가폭력 치유의 장애 요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사회적 관심의 부족이 치유와 회복에 도움이 되지 않음</li> <li>• 이야기를 꺼내는 것이 트라우마를 가중시킴</li> <li>• 진실이 조금씩 드러남에 따라 고통이 더 심해짐</li> <li>• 진실규명이 되지 못해 치유와 악화가 반복되었음</li> <li>• 사건이 왜곡되는 것에 분노를 느낌</li> <li>• 가해자의 태도에 분노를 느낌</li> </ul>	<p>사회적 관심의 부족이 치유와 회복에 도움이 되지 않음</p> <p>트라우마 경험을 말하는 것이 제트라우마를 유발함</p> <p>진실규명이 되지 못해 치유와 악화가 반복되었음</p> <p>지속적인 사건 왜곡 시도에 분노감을 느낌</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정치적인 이유로 국가폭력이 발생함</li> <li>• 정치적인 이유로 국가폭력이 해결되지 못함</li> <li>• 국가폭력이 발생한 이유가 이해되지 않음</li> <li>• 국가폭력의 근원은 일제가 청산되지 않은 것에 있음</li> <li>• 국가수장의 자세나 태도에 따라 부정적인 감정이 들</li> </ul>	<p>정치적인 이유로 국가폭력이 발생되었고 해결되지 못한다고 생각함</p>	16. 국가폭력의 이유와 피해보상에 대한 견해와 감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같은 국가폭력일지라도 보상이 다름</li> <li>• 모든 피해자가 보상을 받지 못함</li> <li>• 가해자가 처벌을 받지 않음</li> <li>• 사죄를 받지 못해 한스러움</li> <li>• 국가폭력 사건이 여전히 한스러움</li> <li>• 절망감을 느낌</li> </ul>	<p>국가폭력 보상이 공정하게 이루어지지 않음</p> <p>가해자가 처벌받지 않은 것에 대해 한과 분노를 느낌</p>	

표 3. 개방코딩 결과: 근거자료의 범주화

(계속 4)

개념	하위범주	범주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개인적 진실규명 노력이 어려움</li> <li>• 가해자를 스스로 처벌하고 싶었음</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국가폭력을</li> <li>개인적으로 해결하려 함</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가해자 가족을 생각해서 복수의 마음을 접음</li> <li>• 복수를 원하나 가해자의 가족을 떠올려 하지 않음</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복수를 통해 또 다른 피해자를</li> <li>만들지 않으려 했음</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진실규명을 위해 집단적 노력을 시도함</li> <li>• 피해자들의 적극적인 진실규명 노력이 필요함</li> <li>• 역사적 진실이 널리 알려져야 함</li> <li>• 국가수장이 나서서 진실규명을 실현해 줄 것을 바람</li> <li>• 진실규명을 위해서는 사회적 변화가 우선되어야 함</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개인과 사회의 지속적인</li> <li>진실규명 노력이 필요함</li> </ul>	17. 진실규명을 위해 사회적 노력이 필요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진실규명이 되기를 바람</li> <li>• 특별법이 제정되지 않아 분노를 느낌</li> <li>• 특별법이 제정되어 화해와 통합이 되기를 바람</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법과 제도의 개선으로</li> <li>진실규명이 되기를 바람</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분노와 원망도 없는 상태가 되었음</li> <li>• 포기하고 잊으려고 하고 있음</li> <li>• 국가폭력 경험에 대해 체념하게 되었음</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체념상태가 되었음</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부정적 기대를 학습함</li> <li>• 사람들에게 사건이 잊혀질까 걱정됨</li> <li>• 진실규명이 되지 않을 것에 대한 불안감</li> <li>• 배상을 받을 것이라는 확신이 없음</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진실규명이</li> <li>되지 않을 것에 대해</li> <li>걱정함</li> </ul>	18. 진실규명에 대한 긍정적 기대와 부정적 기대가 공존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자녀들에게 떳떳하지 않음</li> <li>• 가족의 명예회복이 중요함</li> <li>• 나의 명예회복이 되기를 바람</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개인과 가족의</li> <li>명예회복이 필요함</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국가의 사죄가 필요함</li> <li>• 경제적 배상만이 전부가 아님</li> <li>• 사죄를 통해 용서하고 싶은 마음이 있음</li> <li>• 사후에도 억울함이 지속될 것이라고 생각함</li> <li>• 하루빨리 매듭이 지어졌으면 좋겠음</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사죄를 통해</li> <li>사건이 종결되고</li> <li>가해자를</li> <li>용서하고 싶음</li> </ul>	19. 진실규명을 통해 명예가 회복되고, 사죄를 통해 화해와 치유가 이루어지기를 기대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분개심이 들었으나, 지금은 용서를 함</li> <li>• 내적치유가 이루어지기를 바람</li> <li>• 상생하고 도우며 살 수 있기를 바람</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용서를 통한 화해와 상생이</li> <li>이루어지기를 바람</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사회가 달라져 국가폭력이 재발되지 않을 것이라고 기대함</li> <li>• 진실규명을 통해 국가폭력이 재발되지 않기를 바람</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진실규명이 이루어져</li> <li>국가폭력이 재발되지 않기를 바람</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가족 및 자손에게라도 보상이 있기를 기대함</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가족 및 자손에게 라도</li> <li>보상이 있기를 기대함</li> </ul>	20. 후대는 국가폭력으로 고통 받아서는 안됨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고통의 대물림이 중단되기를 바람</li> <li>• 가족들에게는 피해가 있지 않기를 바람</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고통이 후세에</li> <li>지속되지 않기를 바람</li> </ul>	

적으로 비교하여 연구 참여자들의 진술을 유사한 개념들로 묶어 명명하였다. 유사한 개념들은 공통된 주제에 따라 하위범주로 구분하였으며, 하위범주들을 연관성에 따라 상위 범주로 발전시켰다.

개방코딩의 결과로 170개의 개념과 57개의 하위범주, 20개의 범주가 도출되었고, 1개의 개념만이 도출된 경우 이를 하위범주와 동일하게 명명하였으며, 1개의 하위범주만 도출된 경우에도 범주와 동일하게 명명하였다. 이러한 방식으로 2개의 하위범주가 범주와 통합되었으며, 10개의 개념이 하위범주와 통합되었다.

**축코딩: 국가폭력 피해경험에 대한 패러다임 모형**

축코딩은 개방코딩을 통해 도출된 개념과 범주들을 일관된 속성에 따라 연결시켜 재조

합하는 과정으로, 각각의 범주들이 중심현상과 어떠한 관계를 이루고 있는지를 밝히기 위한 분석이다. Strauss와 Corbin(1998)이 제안한 패러다임 모형에 따라 참여자들의 진술을 인과적 조건, 중심현상, 맥락적 조건, 중재적 조건, 작용/상호작용, 결과로 재구성하였으며, 각각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을 기술하였다. 패러다임 모형은 그림 1에 제시하였다.

**인과적 조건**

인과적 조건(causal condition)은 어떤 현상이 발생하거나 발전하도록 이끄는 사건들로 구성된다. 즉, '중심현상이 발생하게 된 원인이 무엇인가?'에 대한 설명이 된다(Strauss & Corbin, 1998). 국가폭력의 결과로 연구 참여자들에게 발생한 다양한 문제들을 중심현상으로 설정하였고, 개인과 가족, 그리고 공동체가 경험한 국가폭력이 중심현상을 발생시키는 원인으로 판단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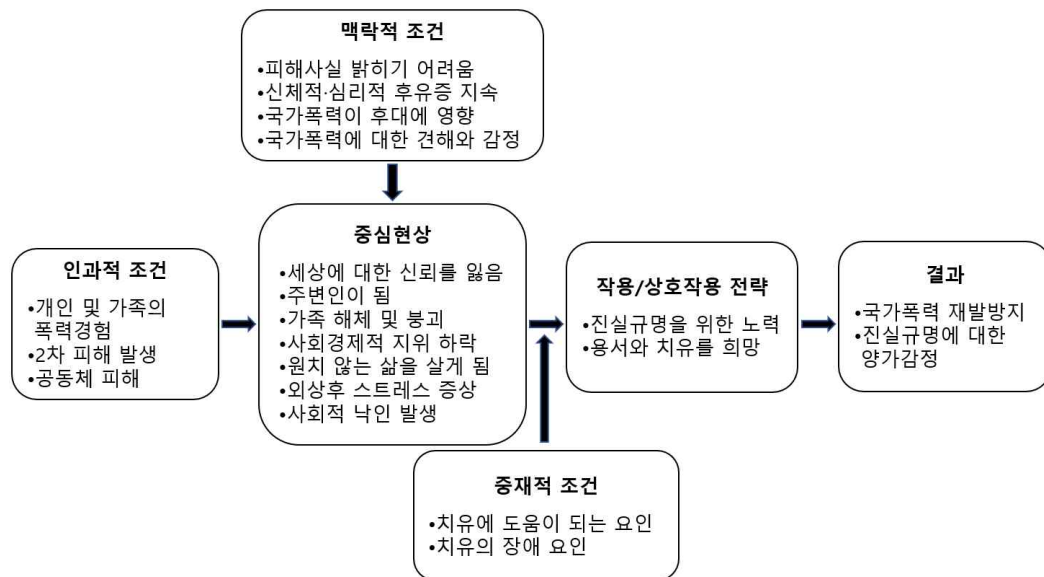


그림 1. 국가폭력 피해 경험에 대한 패러다임 모형

본 연구에서는 범주 1. 국가폭력으로 인해 자신 및 가족이 물리적 폭력을 당함, 범주 2. 국가폭력으로 인해 가족이 지속적으로 심리적·제도적 피해를 입음, 범주 3. 국가폭력에 의한 공동체 피해를 공유함 총 3개의 범주를 인과적 조건으로 설정하였다.

### 중심현상

중심현상(central phenomenon)은 ‘여기서 어떤 현상이 발생하고 있는가?’에 대한 설명으로, 참여자들이 인과적 조건을 통해 경험하게 된 내용들이다. 이는 작용/상호작용 전략에 의해 조절되며, 참여자들의 중심생각이나 사건을 의미한다(Strauss & Corbin, 1998).

본 연구자는 범주 4. 국가폭력에 대한 두려움으로 주변인이 됨, 범주 5. 국가 제도를 포함한 세상에 대한 신뢰를 잃음, 범주 7. 국가폭력으로 인해 가족이 해체되고 붕괴됨, 범주 8. 국가폭력으로 인해 전반적인 삶의 제약이 생겨 사회·경제적 지위가 낮아짐, 범주 9. 국가폭력이 삶의 목표와 의미를 앗아감, 범주 11. 국가폭력으로 외상후 스트레스 증상에 시달림, 범주 12. 국가폭력으로 사회적 낙인이 발생하여 개인과 가족이 고통받음 총 7개의 범주를 중심현상으로 설정하였다.

### 맥락적 조건

맥락적 조건(contextual condition)은 중심현상에 영향을 미치는 구체적인 상황을 말하며, 인과적 조건들의 영향을 강화 또는 약화시키는 것으로 ‘왜 현상이 지속되는가와 관련되어 있다(Strauss & Corbin, 1998). 즉, 중심현상에서 나타난 ‘국가폭력으로 발생한 부정적인 결과들을 심화시키고, 지속시키는 범주들이 이에 속하며, 맥락적 조건은 중심현상에 대한 작용/

상호작용 전략을 직·간접적으로 조절한다.

본 연구자는 범주 6. 피해자임에도 불구하고 피해사실을 제대로 인식하거나 인정받지 못함, 범주 10. 적절히 치료받지 못해 신체적·심리적 후유증이 지속됨, 범주 13. 국가폭력이 후대에도 전이됨, 범주 16. 국가폭력의 이유와 피해보상에 대한 견해와 감정 총 4개의 범주를 맥락적 조건으로 설정하였다.

### 중재적 조건

중재적 조건(intervening condition)은 중심현상의 강도에 영향을 미치는 광범위한 구조적 상황을 의미하며, 주어진 상황이나 맥락적 영역에서 작용/상호작용 전략을 취하는 것을 조절하는 작용을 한다(Strauss & Corbin, 1998). 즉, 중심현상에서 드러난 문제들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고 있는 범주가 이에 속한다.

본 연구자는 범주 14. 국가폭력 치유에 도움이 되는 요인, 범주 15. 국가폭력 치유의 장애 요인 총 2가지 범주를 중재적 조건으로 설정했다.

### 작용/상호작용 전략

작용/상호작용 전략(action / interaction strategy)은 중심현상에 대처하거나 중심현상을 조절하기 위해 취해지는 의도적인 행위로, 드러난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이라고 할 수 있다(Strauss & Corbin, 1998). 즉, 참여자들이 경험한 상황이나 문제들을 어떻게 다루고 있는지와 관련된 범주가 이에 속한다.

본 연구자는 범주 17. 진실규명을 위해 사회적 노력이 필요함, 19. 진실규명을 통해 명예가 회복되고, 사죄를 통해 화해와 치유가 이루어지기를 기대함 총 2개의 범주를 작용/상호작용 전략으로 설정했다.

**결과**

결과(consequence)는 작용/상호작용 전략에 의해 의도적이거나 자연 발생적으로 나타나는 것이다(Strauss & Corbin, 1998).

본 연구자는 중심현상 ‘국가폭력으로 발생한 부정적인 결과들’에 대한 참여자들의 노력(작용/상호작용)으로 나타나는 결과를 범주 18. 진실규명에 대한 긍정적 기대와 부정적 기대가 공존함, 범주 20. 후대는 국가폭력으로 고통받아서 안 됨 총 2개의 범주로 설정했다.

**과정분석**

과정분석은 패러다임 모형의 분석결과들을 시간의 흐름에 따라 순차적으로 분석하는 방법으로 범주와 하위범주들 간의 연속적인 관계를 파악하며, 통합과 변화를 발견하는 데 도움을 주고, 논리적 흐름을 발견하고 범주의 정교화에 기여한다(Strauss & Corbin, 1998).

분석을 위해 참여자들의 진술을 시간의 경

과에 따라 정리하고, 경험의 과정과 그 속에서 드러나는 심리적 변화들을 중심으로 과정 분석을 실시하였다. 그 결과 ‘외상 단계’, ‘고립 단계’, ‘저항 단계’, ‘체념 단계’, ‘회복 단계’, ‘성장 단계’의 6단계로 참여자들의 국가폭력 경험이 삶에서 드러나는 과정을 도출했다. 제시된 일련의 과정이 순차적으로 이루어진 경우는 화살표를 실선으로 표시했으나, 불완전하며 조건에 따라 다음 단계로의 진행이 달라질 경우는 화살표를 점선으로 표시하였다.

외상 단계는 국가폭력이 발생하는 시기로 직·간접적인 폭력의 피해로 트라우마를 경험하게 되는 단계이다. 고립 단계는 트라우마 이후의 2차 피해로 빨갱이, 반란군의 자식이라는 낙인으로 공동체로부터 고립되고 사회적 지지체계가 사라지게 되는 단계이다. 이 두 가지 단계는 각각 영향을 주고받으면서 트라우마를 더욱 심화시키는 결과로 이어졌다. 진실규명을 위한 시도 및 유족회 활동을 통해 자신의 억울한 피해사실을 밝히고자 하는 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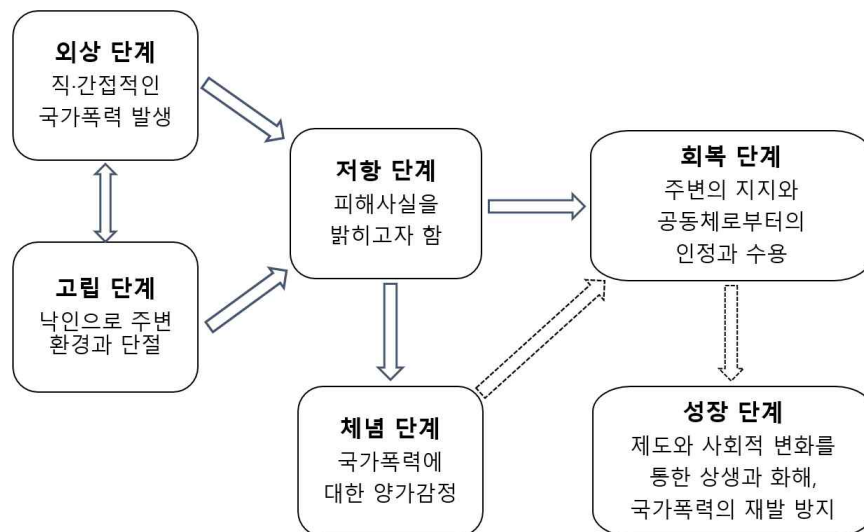


그림 2. 국가폭력 피해 경험에 대한 과정 분석결과



력, 그리고 국가폭력 사건을 왜곡하려는 시도  
에 저항 등 자신의 손상된 정체성을 회복하기  
위한 노력의 단계가 저항 단계라고 할 수 있  
다. 저항 단계에서 진실규명의 어려움과 희망  
과 좌절이 반복되는 경험을 하게 되어, 진실  
규명에 대한 부정적 기대를 학습하게 되는 경  
우 체념 단계에 빠지게 되는데, 체념상태가  
진실규명이나 손상된 정체성 회복에 대한 포  
기만을 뜻하는 것은 아니었으며, 이면에는 자  
신의 억울함이 해소되기를 바라는 기대가 남  
아 있는 등 국가폭력에 대한 양가감정을 가지  
고 있었다. 체념 단계는 국가폭력에 대한 양  
가감정이 남아 있어 자신의 피해사실이 인정  
받거나, 공동체의 소속감을 회복하고, 지지체  
계를 발견하게 되면 국가폭력 트라우마로부터  
회복 단계로 발전할 수 있었다. 이러한 발전  
과정은 저항 단계에서 회복 단계로 가는 과정  
과도 유사하다. 그리고 성장 단계는 분석에서  
드러난 마지막 단계로 자신의 트라우마 회복  
뿐만 아니라 사회와 상생, 가해자와의 화해,  
그리고 국가폭력이 재발되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이 드러났다. 그러나 성장 단계가 모든  
참여자들에게서 발견되지 않았으며, 성장 단  
계는 개인적인 치유나 회복의 의미뿐만 아니  
라 제도와 사회적 인식 등이 변화함으로써 공  
동체가 변화하는 것을 포함한다. 결국 국가폭  
력은 개인의 회복으로만 해결될 수 있는 것은  
아니며, 과거에 피해자들을 고립시키고 소외  
시켰던 공동체로부터 국가폭력 피해자들의 상  
처와 고통이 인정되고 수용되는 것이 성장에  
중요함이 드러났다. 또한 제도적·사회적 노  
력을 통해 더 이상의 국가폭력이 발생하지 않  
는 사회를 만드는 것이 개인의 회복, 그 너머  
의 성장을 이룰 수 있게 한다.

**외상 단계: 직·간접적인 국가폭력 경험**

외상 단계에서는 직접적이고 간접적인 국가  
폭력 경험이 드러났다. 트라우마의 시작은 국  
가폭력을 직·간접적으로 경험하였거나, 그  
사실을 인지하기 시작한 순간부터 시작되었다.  
자신의 생명이 위협당할 정도로 심한 폭행이  
나 고문을 당했으며, 총상을 입기도 했고, 가  
족이나 이웃의 죽음을 목격했다. 그때의 공포  
를 생생한 장면으로 기억하고 있었으며, 침습  
적으로 그런 기억들이 떠오르고, 고통에서 벗  
어나려고 하지만 그 방법을 알 길이 없었다.

“저희 아버지가 진압군들 철수하고, 학  
교 운동장에 가니까 저희 형님이 피가 응  
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피를 손으로 [떠  
가지고] 해가지고 형님 시체에다 넣는데,  
그거를 목격했었는데 너무 너무 비참했어  
요. 지금도 그 생각만 하면 너무 억울해요.  
왜냐면 무고한 사람들을 데려다 빨갱이로  
몰아서...” (Y11)

또 다른 피해가 두려워 도망을 다녀야 했으  
며, 밤마다 숨어서 공포를 참아내기를 반복해  
야 했다. 그러나 자신이 왜 피해 다녀야 하는  
지 그 이유조차 알 수 없었고, 그것을 이해하  
기에는 어린 나이였다.

“제일 제가 많은 상처를 받은 것은 가  
꿈가다 지금 보면 그 끌려간 피해자들 자  
식들 나중에 보복을 한다 해서 돌을 묶어  
서 바다에 갔다 수장을 시켜버린다고 하더  
라고요. 그러니까 밤마다 숨어야 해요. 메  
밀밭에 가서 하얀 천을 둘러쓰고, 추우니  
까... 메밀밭은 하얗잖아요. 거기서 밤을 거  
의 새워야 해요. 겨울이고 언제고 집에는

있을 수가 없으니까...” (Y10)

고문과 폭행, 총상 다양한 폭력 행위가 무차별적으로 일어났으며, 그 대상은 나이와 성별을 고려하지 않았다. 또한 불온한 행위를 자신이 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시인을 하는 것이 삶을 연명하는 길이었는데, 시인을 해도 그 죄를 물어 폭행을 당해야만 했다.

“전기고문하고, 전기고문을 어떻게 하나면 심지어 여기 성기에 전기 하나를 감고 하나는 발에다 감고 이렇게 해서 돌리는 거예요...(중략)...그때 여자들하고 매춘을 했니, 성관계를 했니 하면서 때리는 거예요. 없다 해도 결국은 그렇게 때리는 거예요.” (J4)

당시 군인과 경찰에게 갑작스럽게 연행되는 사람이 비밀비재했으며, 조사와 수감 후에 돌아올 것이라고 기대했으나, 다시 가족의 품으로 돌아오지 못했다. 왜 끌려가야 했는지 그 이유에 대해서도 제대로 알려주지 않았으며, 시체조차 찾을 수 없는 경우도 많았다.

“저희 아버지는 순수하게 낫 놓고 기억자도 모르는 양민이었는데 좌익이니 우익이니 이런 것도 모르고 그런 편에 서지도 않고 먼 친척이 그런 쪽에 산에 좀 올라갔다고 해서 그렇게 됐다고 말을 들었는데,.. 우리 아버지가 OO형무소를 갔거든요? 15년 형이라고 해요. 15년이 됐으면 돌아와야 되는 것 아닙니까?” (J8)

직·간접적인 트라우마는 그가 속해 있는 마을 공동체 전체에게 발생했으며, 자신의 가

족 특히 자녀들에게도 영향을 주었다.

“동네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쫓겨가고 끌고 가서 눈도 안 가리고 뒤로 헤가지고...(중략)...무서워서... 어른들이 이제 막... 동네 사람들 데려가 가지고... 찾는데 비가 그렇게 많이 와가지고 전부 모르겠다라고요. 하루에 와서 못 찾고, 3일 만에 찾고, 어른들이 가서 찾고...” (Y1)

참여자들의 대부분은 당시의 상황을 생생하게 기억하고 있었다. 오랜 세월이 흘러 사건에 대한 기억이 주변의 상황이나 자신의 정서에 따라 변형되었을 수도 있겠지만, 선명한 장면으로 기억된 그날의 트라우마는 잊혀지지 않은 채 평생을 함께했던 것으로 보인다. 그들의 삶은 국가폭력으로 인해 완전히 바뀌었으며, 평범한 삶을 살았을지도 모를 그들의 인생에 응어리진 고통과 서러움을 남겼다.

#### 고립 단계: 주변 환경으로부터의 고립과 단절

고립의 단계에서는 국가폭력의 결과로 이들에게 찍힌 낙인이 드러났다. 참여자들은 세상과 주변 사람들, 즉, 국가와 이웃을 신뢰하기 어려웠다고 했다. 국가폭력은 공동체의 파괴로 이어졌는데, 자신과 가족의 생존을 위해 다른 이를 먼저 낙인찍어야 하는 상황이 발생했기 때문이다. 이를 안규수(2014)는 여순사건에 대한 자신의 자전적 수필에서 ‘손가락 총’이라고 표현했는데, 이웃을 죽이는 것을 서로를 향한 손가락질로부터 시작했다는 것이다. 이웃의 밀고로 어느새 자신이 빨갱이가 되어 있었고, 폭력을 행사한 국가가 두려워 군대를 기피하고 도망을 다녀야만 했다. 국가와 공동

체에 의해 자신이 빨갱이, 반란군의 자식이 되는 등 개인의 정체성이 외부의 강압에 의해 손상되고, 원치 않는 형태로 변형되는 경험을 하게 된 것이다.

“우리 어머니나 우리 가족들을 공격했던 그 사람들도 뻔하게 살고 있어요. 스파이처럼 우리 집이 어딘지 알려줬으니까 그 산에 사는 사람들이 우리 집이 어딘지 알았겠죠. 동네에 스파이가 있단 말이죠. 그게 참 이웃 간에도.” (J2)

돌아가신 아버지의 시신을 찾고도 그 시신을 찾으러 가는 것조차 두려운 일이었으며, 남몰래 시신을 수습하여 매장하기도 하였다. 또한, 아버지의 사망을 할머니에게 알리지도 못했는데, 그 충격을 견디지 못할 것이라고 여겼기 때문이었다. 그들에게는 너무도 선명한 이러한 피해사실을 증명하는 것은 피해자의 몫이었으며, 3명의 이상의 인우보증이라는 조건은 억울한 피해사실을 입증하는 것을 더욱 어렵게 만들었다. 더욱이 적절한 학습의 기회조차 제공받지 못해 무지했던 자신의 탓으로 이를 증명하지 못했다는 자책을 하기도 했다.

“서류를 할 때 국가에서 제도가 잘못된 거예요. 어디서 죽었으면 그 증인을 세우라는 거예요. 증인을 둘 이상을 세워야 하는데, 증인이 없으면 안 된다 이거야. 그러면 한 무더기 가서 여러 사람 죽은 사람들은 서로 어깨 보증을 서니까 가능한데, 저희 아버지는 혼자 가서 세상을 뺏단 말입니다? 그래서 증인을 세우라는데 누가 아는 사람이 있습니까?... (중략)... 지방법원에서

는 통과가 돼서 고등법원 가서 패소를 당했어요...” (Y3)

빨갱이, 반란군의 자식이라는 낙인이 평생의 꼬리표처럼 따라다녔고, 약혼이 파기되기도 했다. 공직사회의 진출은 신원조회에서 드러난 낙인으로 번번이 좌절되었고, 이러한 피해가 자식들에게까지 이어진 것이 큰 한이 되었다. 외상후 스트레스 증상은 고단한 삶으로 인해 잠시 잊혀지기도 했지만, 해마다 사건이 있었던 날이 되면 기억은 다시 생생해졌고, 사건의 진실을 밝히는 과정에서 몰랐던 정보를 알게 되는 것은 반가운 소식이 아니라 새로운 고통의 시작이었다.

“내가 약혼을 했는데 약혼녀가 가족 전체가 산에 올라갔는데 이제 산에서 내려오니 나보고 OO이 산 폭도하고 결혼해서 는 결혼식에 아무도 안 간다 그렇게 해서 파혼해버렸죠. 그래서 다른 여자하고 결혼을 했죠.” (J4)

“제가 경찰 시험을 봤었습니다. 우리 고등학교 동창, 우리 반에서 세 사람이 시험을 봐서 합격 돼서 같이 자랑하고 그랬는데, 임명장이 안 보이니까 나중에 보니 연좌제 때문에 퇴교 당했어. 그때야 연좌제라는 것을 알았죠.” (J9)

“아들 하나가 고대 나온 놈인데, 아들한테 그랬어. 육사를 가겠다고 하면 가고 그게 안 된다고 그러면 어디 경찰서에 가서 목매달고 죽어버리자고. 근데 마침 육군 사관학교를 안 가더라고. 아들하고 그런 얘기까지 했었어.” (J5)

트라우마는 개인이 가지고 있는 신념체계를 한순간에 무너뜨리는 매우 심각한 사건이라고 할 수 있다. 국가가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켜줄 것이라는 아주 기본적인 믿음이 국가의 폭력 행위로 무너지게 된 것이다. 무너진 신념을 재건해 가는 과정에서도 이들은 국가폭력을 경계해야만 했을 것으로 보인다. 즉, 국가폭력의 회복과정에 국가의 개입이 필연적이며, 국가의 양면성을 경험한 국가폭력 피해자들은 국가와 정부를 경계해야만 그들의 생존이 보장받을 수 있다고 생각했을 것이다.

**저항 단계: 피해사실을 밝히기 위해 노력함**

저항 단계에서 참여자들은 자신의 피해사실을 증명하기 위해 개인적·집단적 노력을 하기 시작했다. 개인적인 노력이 한계를 드러내자, 유족회를 결성하여 조직적인 저항을 했으며, 특별법 제정을 위한 노력을 하기도 했다. 자신의 피해사실을 입증하기 위해서 국가와 정부에 저항한다는 사실을 뿌듯하게 여겼으며, 이를 통해 사회적 인식의 변화가 생겼다는 생각이 트라우마 치유에도 도움이 되었다.

“역사에 살아 숨 쉬는 역사가 되어야 된다. 우리들이 죽어블면 인마 저... 이 [5·18민주화운동] 거시기 연이 사라질지도 몰라요. 젊은 사람들이 모르더라고요. 그러니까 어떤 일이 있어도 우리는 여기서 시작을 하고, 뿔을 하는 거 보고 나가지 더 이상 우리는 나갈 수 없다. 그리고 버티고 있는 거예요...” (G2)

“나와서 보니까 이런 친구들이 다 있어서 아, 나만 이렇게 고통받을 것이 아니었구나, 나 같은 사람이 이렇게 많았는데 이

렇게 살아왔구나. 나와서 보니까 반갑더라고요. 나같이 살아온 사람들이구나 싶고, 형제 같아. 그래서 오란 데만 있으면 이렇게 나와서 쫓아다녀. 친구같이 반갑고 그렇게 살아 나왔어.” (Y5)

진실규명과 명예회복을 경제적 배상이나 보상보다 더 큰 가치로 여겼으며, 국가의 사죄로 하루빨리 국가폭력 사건이 매듭지어지기를 바랐다. 가해자 처벌이나 진실규명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것에 큰 분노를 가지고 있었으며, 이러한 절차가 제대로 진행되지 않는 것이 정치적인 이유로 이해하고 있는 경우도 많았다.

“돈으로 보상이 되겠습니까? 안 되죠. 그동안에 피해를 일생을 안고 살아왔는데 한 사람의 억울함이 당사자로 끝나는 게 아니잖아요. 가족 전체가 피해를 보는 것이고 그 피해를 담고 지금까지 살아온 거죠. 그게 무엇으로도 보상이 되지 않죠. 물론 돈으로 약간 보상이 될는지 모르겠지만 그것을 치유로 보지 않습니다.” (Y6)

국가폭력 사건의 원인을 왜곡하는 가짜 뉴스와 보수세력의 주장이 반복되었고, 정권에 따라 ‘진실’을 대하는 태도가 달라지는 경험을 하기도 했다. 역사를 왜곡하려는 시도에 분노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는 근절되지 않았으며, 이에 따라 트라우마는 악화와 호전을 반복하게 되었다.

“잊을만 하면 나오고, 잊을만하면 나오고. 오늘도 다 거기 갔어요. 지금 거기 지만원 재판소. 그래도 인자 우리한테는 그

렇게 속에서 천불이나도 말 한마디 못하고. 그리고 나올라면 기가 막힌다. 한번은 어찌 성질이 나가지고 그 변호사가 하는 말이 육천 명인가 이북에서 내려와가고 광주사태를 일으켰다고 한다, 하도 기가 막혀서.” (G2)

특별법이 제정되어 진실규명이 실현되기를 바라며, 역사적으로 보전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였다. 개인적 노력뿐만 아니라 공동체의 노력이 필요하며, 아직까지 자신의 피해사실을 밝히지 못하고 있는 피해자들이 용기를 내 사회로 나올 수 있기를 바란다 고 하였다.

“제 개인적인 입장에서는 교육적으로 이 부분에 대한 진실에 대한 내용들을 교육해주었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사건이나, 반란이나, 폭도나 이런 것들을 정확히 해서 어린애들부터 교육적으로 많이 진실적으로 가르치거나 해야 하는데 그런 게 없어서... 지금 잘 몰라요. 역사책에 잘 나와 있지도 않고. 육지에 있는 대학생들한테 물어보면 4·3이 뭐예요? 한다니까요. 많이 알려지고 있지만 여전히 모르는 사람이 많으니 국가에서 홍보도 많이 하고 했으면 좋겠습니다.” (J3)

#### 체념 단계: 국가폭력에 대한 양가감정

체념 단계에서는 국가폭력에 대한 양가감정이 드러났다. 국가폭력은 진실규명과 책임자 처벌, 책임자의 사과가 이루어져야만 한다. 그렇지만 정권에 따라 진실규명에 대한 의지나 태도의 차이가 분명했고, 이를 여러 차례 경험한 참여자들은 진실규명의 실현에 대한 걱

정을 드러내기도 했다. 그래서 분노도 원망도 남지 않은 체념상태가 되었다고 했는데, 그 이면에는 국가가 자신의 손을 잡아주기를 바라는 마음이 여전히 남아 있는 듯했다. 오랜 세월이 지나서 폭발할 것 같은 분노는 사그라 들었지만 가슴속 응어리는 한(恨)이 되어 남아 있었다. 복수를 생각하기도 했으나, 복수는 또 다른 복수를 만들어 낼 것이라는 생각과, 그들도 누군가의 아버지일 것이라는 생각에 복수의 마음을 돌리게 되었다.

“현실에 맞춰서 열심히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제가 불만가지고 바뀔 수 있는 게 아니니까. 살아야 하니까 어쩔 수 없이 현실을 받아들이고 거기에 따라 여기까지 온 거죠. 거기에 대해 확실히 진실규명이 되는 것은 저보다는 어르신들이 더 많은 고통을 겪으셨으니까.” (J3)

“저는 이제 잊어버리니까... 오래돼서 잊어버리니까... 잊어버리고 삽니다. 제법 나이가 드니까 언젠가는 얼마 안 살면 나도 갈 것이라. 그때 가면 형님 만나야지. 하를 나라에서. 그냥 포기하고 있습니다.” (Y7)

#### 회복 단계: 주변의 지지와 공동체로부터의 인정과 수용

회복 단계에서는 주변의 지지와 사회적인 변화가 있음을 인식하는 것이 드러났다. 정권의 변화로 인해 국가폭력을 인정하고, 대통령이 직접 사죄를 한 것이 사회적 인식의 변화에 큰 영향을 준 것으로 생각된다. 공동체로부터 소속되지 못하고, 제도권에서 속하지 못한 채 살았던 참여자들이 정부의 인정과 지지를 받는 경험이 억울함을 풀어내고 희망을 갖

게 하는 데 긍정적으로 작용하고 있었다.

“사실상 가장 과거와 달라진 것이 4·3의 아픔을 지금에 와서 각계 단체에서 관심을 갖고 어떻게 하면 그 아픔을 씻을 수 있을까 같이 고민하는 것이 상당한 보람이에요.” (J2)

“대통령이 와서 사과했고, 김대중 대통령 시절부터 그쪽으로 우리를 많이 도우려고 해줬고, 문화의 집 같은 거 다 만들었잖아요...(중략)...마지막에 하나 더 붙일 것은 재발 다시는 그것에 대해 의지하지 말고, 그렇지 않으면 계속 잡을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런 것을 [국가폭력을] 못하게끔 만들란 말이야.” (J1)

명예회복이 된다는 것은, 빨갱이와 반란군의 자식이 아니라는 것을 공식적으로 인정받는 것이다. 신체적 상처는 시간이 지나서 회복되었지만, 낙인으로 인한 두려움은 평생을 함께했고, 심리적인 치유가 이루어지지 않고서는 회복이 어려울 것이다. 국가폭력 치유의 시작은 진실규명과 가해자의 처벌, 가해자의 사과가 첫 단계이다. 이 과정을 통해서 손상된 정체성의 회복이 시작될 수 있으며, 공동체로 다시 돌아갈 수 있게 된다.

“호적에 빨간 줄만 없애줘라. 대대로 봤을 때, 내가 지금 손주가 있는데, [증손주] 손손주가 할아버지 호적을 봤을 때 빨간 줄이 있으면 되겠느냐, 그것만 없애줘라. 보상도 필요 없다 그랬어요...(중략)...전 다 필요 없어요. 호적에 빨간 줄만 없애지면... 아버지가 죄지어서 그런 건 아니잖습니까?

그것이 지금 저의 소원입니다.” (Y3)

“저는 4·3 일을 하는 것은 명예도 아니고 아버지에 대한 아버지의 도리로서 정말 노력해서 명예회복을 시켜야 자식이 간 다음에... [눈물을 흘리며] 아들 참 착하구나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J8)

**성장 단계: 제도와 사회적 변화를 통한 상생과 화해, 국가폭력의 재발 방지**

가해자가 사죄하고 용서를 구한다면 지금이라도 용서를 하고 싶다고 말하는 참여자들도 있었다. 많은 참여자들은 국가가 나서서 국가폭력 사건을 하루빨리 매듭짓고 공존과 협력이 가능한 사회를 만들어 가기를 바라고 있었다. 그러나 이러한 긍정적인 바람의 이면에는 70년 이상, 30년 이상의 고통의 역사가 있었다. 평생토록 지속된 싸움과 반복된 좌절 속에서 싸우기도 지쳐있으며, 살날이 얼마 남지 않아 사건이 하루빨리 마무리되었으면 하는 바람이 었보였다. 또한 성장 단계에서는 공동체의 수용과 인정이 필요한 것으로 보이는데, 이는 공동체로부터 고립되어 지냈던 피해자들이 빨갱이, 반란군의 자식이라는 낙인으로 부터 벗어나 공동체로 돌아가는 것을 의미한다.

“당연히 벌을 받아야지. 벌을 받아야 하는데 그것이 어느 정도 될지는 인자 앞으로 모르지만은... 그렇게 한 것 보다도 자기가 솔직히 말해서 잘못 했다고 한다면 우리도 용서해주고, 우리 기분도 풀어지고... 그것만 밝혀진다면...” (G6)

“세월이 약이라고 인자 몇십년이 흐르

고 난게 지금이라도 자기가 죽기 전에 잘 못했다는 사죄를 하든 우리가 좀 죽이든 살리든 못할 형편인게 용서를 해주고 싶어요.” (G2)

일반적인 트라우마의 치유에는 피해사실이 입증되고 법적인 보호를 받는 절차가 포함되어 있다. 그 과정이 지나고 나서야 치유가 가능하다. 그렇지만 국가폭력 트라우마의 경우는 여전히 피해사실을 증명하기 위한 절차가 진행되고 있으며, 언제쯤 혹은 실현 가능할 것인가에 대해서 누구도 확답을 할 수 없는 상황이다. 그래서 진실규명이 되지 않고 사람들에게서 잊혀지지는 않을까 걱정을 하기도 했으며, 자녀세대에게까지 대물림될 것에 대한 염려를 드러내기도 했다.

“우리 당대 넘어서 우리 후세대들이 안 하려고 하면 허수 되는 것이야. 이것을 항상 역사에 기록이 되어야지 손에 쥐고 갈 수는 없는 것이야.” (Y3)

국가폭력은 여전히 진행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해자 중심의 사고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공동체와 미래 지향적인 사고를 하기도 했는데, 이는 내적 성장(growth)의 결과로, 분노와 원망이 화해와 상생으로 발전한 것이며, 자신의 피해 경험의 의미를 발견한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저희들이 받았던 상처가 다음 세대까지 이어지지 않고 국가가 바로 서서 다시는 그런 험난했던 시대가 이 땅에서 이루어지지 않기 위해서 저희가 희생물이 되었지만 그렇게 된다면 너무나 감사

하죠.” (Y6)

“정말 다시는 이런 일이 이 땅에서 일어나지 않겠다는 것이 저 나름대로 주어진 여건 속에 지역사회에서 앞장서서 정치인들이나 또 이념이 다르게 가는 사람들에게 설득해보고 싶고, 같이 그분들하고 공존해보고 싶다.” (Y10)

### 결과 종합

본 연구는 근거이론을 사용하여 국가폭력 피해자들의 트라우마 경험 과정에 대해 알아보고, 국가폭력 트라우마와 일반 트라우마에서의 경험의 차이가 무엇인지 밝히고자 하였다. 이와 더불어 국가폭력 트라우마 치유에 도움이 되는 요인이 무엇인지를 알아보았다. 연구 참여자는 국가폭력 피해자 및 유가족이었으며, 제주4·3사건 11명, 여수·순천10·19사건 11명, 5·18민주화운동 6명 총 28명을 대상으로 심층면담을 실시하였다. 심층면담 내용을 전사 후 Strauss와 Corbin이 제시한 분석 방법에 따라 개방코딩, 축코딩을 실하였다. 개방코딩 결과, 총 170개의 개념과 57개의 하위범주, 20개의 범주가 도출되었다.

분석 내용을 종합해 보면, 국가폭력 피해자들은 국가폭력이 발생한 이후에 폭력의 직·간접적인 피해로 외상후 스트레스 증상을 경험하게 되며, 아버지의 사망으로 가족이 해체되고 성장 과정에서 필요한 양육을 제대로 제공받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빨갱이’, ‘반란군의 자식’이라는 낙인이 찍히게 되어 공동체로부터 고립되어 지내고, 제도권에 소속된다는 것은 국가폭력에 대한 공포를 가져와 도망을 다니거나 숨어서 지내는 경우도 있었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트라우마가 형성되는 것으로 보이며, 피해사실을 호소하거나 인정받지 못하고, 자녀세대에게까지 트라우마가 전이되는 것이 트라우마를 더욱 심화시키는 원인이었다. 국가폭력의 피해사실을 적극적으로 밝혀 보상을 받고, 공동체로부터 수용과 인정을 받은 경우는 트라우마로부터 회복이 가능했으며, 국가폭력에 대한 사회적 인식의 변화를 이끌고 가해자를 용서하고 화해와 상생을 할 수 있는 성장 단계로 발전을 하는 것으로 보였다. 이것이 연구 참여자들의 진술에서 드러난 국가폭력 피해 경험이라고 할 수 있으며, 국가폭력 트라우마와 일반트라우마에서의 경험의 차이도 이를 통해 드러났다.

국가폭력 트라우마의 경우 사회적 낙인이 광범위하고 지속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피해자임에도 불구하고 피해사실을 직접 밝혀야만 했다. 피해사실을 밝히기 위해서는 국가라는 거대한 조직을 마주해야만 했고, 피해자로서 국가로부터 보호를 받는 경험도 없었다. 개인적인 노력만으로 국가폭력 트라우마를 극복하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이었으며, 그 이유는 국가폭력은 공동체 전체의 공모된 침묵과 그 행위에 대한 인정이 내재되어 있기 때문이다. 국가폭력의 회복에 공동체의 인정과 수용, 사회적 인식의 변화가 중요한 이유가 바로 이 때문이다. 요컨대 국가폭력 트라우마는 일반 트라우마보다 더 복잡한 구조적 요인을 가지고 있는데 그것이 바로 우리의 사회와 문화, 공동체였다. 공동체 역할의 중요성은 잘 알려져 있으며, 국가폭력은 지역 공동체가 그 트라우마를 공유하기도하고 또 묵인하기도 하면서 회복에 도움을 주거나 트라우마를 악화시키기도 한다.

## 논의 및 제언

### 논의

분석결과를 바탕으로 몇 가지 핵심적인 내용을 논의하고자 한다.

#### 정체성의 상실과 회복

일반 범죄사건 피해자의 경우 ‘피해자’와 ‘가해자’가 구별되는 순간 ‘피해자’라는 정체성을 갖게 되고, 보호를 받게 된다. 그러나 국가폭력의 경우 피해자라는 정체성은 국가폭력 피해를 지속시키는 결과로 이어지게 되는데, 국가폭력은 피해자를 체제에 위협이 되는 인물로 규정하여 폭력의 정당성을 얻기 때문이다.

본 연구에서 국가폭력 피해자들은 국가폭력 이후에 국가에 의해 ‘선량한 시민’이라는 자신의 정체성을 부정당하고, ‘빨갱이’ 혹은 ‘반란군의 자식’이라는 새로운 정체성을 부여받게 되며, 이후 공동체로부터 고립되어 지냈던 것으로 나타났다. 국가폭력은 자신이 가지고 있는 정체성이 부정당하게 되는 정체성 트라우마에 속하며, 국가와 사회가 규정하는 정체성 속에서 지속적이고 장기적으로 피해를 입게 된다(Kira et al., 2013). 일반 트라우마에서는 신체적·심리적 문제에 대한 치료적 접근이 우선시 되며, 의학적 접근을 통한 ‘환자’라는 프레임 속에서 보호를 받는다. 그러나 국가폭력 트라우마는 신체적·심리적 치료에 앞서 피해사실을 입증해야 하고, 자신의 정체성을 회복해야 하는 과정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들에게 ‘환자’라는 프레임을 동일하게 적용하는 것은 부적절하다. ‘나는 국가폭력의 피해자이지, 치료의 대상이 아니다’, ‘심리적 고통이 중



아지면 국가폭력에 대한 억울함과 분노도 사라질 것 같아 치료를 받고 싶지 않다고 말했던 어느 국가폭력 피해자의 진술은 국가폭력 트라우마에 대한 의학적 접근의 한계를 단편적으로 보여주는 예라고 할 수 있다.

### 공동체의 변화

대부분의 역사학자들과 심리학자들은 트라우마 치유의 첫 단계에 진실규명과 책임자 처벌이 중요하다고 주장하였다. 그리고 이 과정에 정치·문화·생태적 환경 등 사회구조적 요인이 개입을 하게 된다고 설명하였다(김석웅, 2019; 김왕배, 2014; 이영재, 2010; 정호기, 2006). 이러한 사회구조적 요인의 중요성에 대해서 최상진과 한규석(2000)은 인간이 관계 맺고 상호작용하는 환경은 물리적 환경과 사회·역사·문화적 환경으로 구성되며, 이들은 개별적 복합적인 형태로 인간의 심리경험의 성격을 매개하거나, 직접적 과정을 통해 인간의 심리와 심리현상을 구성하는 데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본 연구 참여자들이 경험한 제주4·3사건, 여수·순천10·19사건, 5·18민주화운동의 경우 모두 한 지역 내에서 발생한 사건으로 그 지역 공동체가 사건에 대한 경험이나 정서를 공유하게 되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이다. 폭력의 공포와 상실을 공유하기도 하나, 일부에서는 내가 빨갱이가 아니라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 나의 이웃에게 손가락질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하기도 했다. 나와 함께 아파했던 이웃은 더 이상 신뢰할 수 없는 타인이 되어야 했으며, 그렇게 공동체는 와해 되기 시작한 것으로 보인다. 참여자들의 진술에서 당시의 피해 사실을 쉬쉬하며 드러내기 어려웠던 것은 주변의 시선이 두려워서, 혹은 또 다른 피해의

발생이 걱정되었기 때문이었다.

트라우마의 치유과정에서 그 사건을 사회가 어떻게 인식하고 받아들이는가에 따라서 사건의 해결 과정은 많은 차이를 드러낸다. 현재까지 일부 국가폭력 피해에 대한 배·보상이 이루어지고 명예회복이 된 것은 사실이나, 국가폭력에 대한 사회적 인식에는 큰 변화가 없었다(한홍구, 2018). 그것의 일례가 5·18민주화운동에 대한 왜곡 시도라고 할 수 있다. 5·18민주화운동이 여전히 폭도들에 의해서 발생한 것이며, 북한군이 개입했다는 이른바 5·18망언<sup>1)</sup>은 지난 2017년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되어 현재까지 더 조직적으로 번지고 있다. 2022년 5·18민주화운동 등에 관한 특별법이 제정되어 5·18왜곡에 대한 처벌이 가능해졌으나, 5·18망언을 옹호하거나 그것에 대해 의구심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여전히 있다는 것이 더 근본적인 문제라고 할 수 있다. 사회와 공동체의 인식이나 태도에 따라 트라우마는 재경험되고, 다양한 형태로 재생산될 수 있다. 비단 5·18민주화운동뿐 아니라 다른 모든 국가폭력 사건들도 마찬가지다. 국가폭력으로 규정되었으나, 그 피해자들은 보호받지 못하고 있으며, 보호받지 못한다는 현실은 폭력의 재생산을 가능하게 한다. 사회적 낙인과 고립이 재현되는 것 역시 국가폭력의 연속이라고 할 수 있다. 억울하게 숨진 수많은 민간인들에 대한 사회적 책임은 우리 모두에게 있다는 인식의 변화가 필요하다.

1) 5·18민주화운동이 폭도들에 의해서 발생한 것이며, 북한군이 개입한 사건이라는 ‘5·18망언’은 2017년부터 국회의원과 보수단체에서 본격적으로 전개되었다. 이와는 반대로 이러한 행위를 처벌하기 위한 법 제정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있었다.

### 공동체 트라우마와 낙인의 지역화

국가에 의해 조장된 낙인은 피해자들을 공동체로부터 고립시키고, 단절을 심화시켜 트라우마가 악화되게 만든다. 일반 트라우마에서도 지역사회의 낙인, 유사한 범죄 피해가 재발할 것에 대한 공포, 자신과 자신이 속한 세상에 대한 부정적인 믿음이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Heidi et al., 2009; Hertz et al., 2005). 그러나 국가폭력의 경우 정부 조직이 그들의 폭력 행위를 정당화하고, 은폐하며, 피해자에게 이념적 낙인을 찍는 등 조직적이고 지속적으로 발생한다는 특징을 가지고 있어 외상 사건 이후에도 외상 경험이 반복될 수 있다는 점에서 일반 트라우마와 구분된다(한홍구 등 2012).

공모된 침묵으로 인해 피해자는 자신이 속한 공동체로부터 유리되어 고립되게 되며, 주변 사람들과 공동체에 대한 불신을 자연스럽게 형성하게 된다. 본 연구에서 살펴본 제주 4·3사건, 여수·순천10·19사건, 5·18민주화운동, 세 사건 모두 특정 지역에서 발생해 다수의 희생자가 발생했다는 공통점을 가지고 있는데, 지역적인 특성으로 인해 피해자가 밀집되어 있으며, 쉽게 고립되는 특징을 가지고 있었다(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2009). 밀집성과 고립성으로 인해 트라우마가 공동체에 공유되고, 비슷한 사회적 환경과 맥락에 노출되게 되는데, 이러한 사회·문화적 변수들이 트라우마 발생과 지속에 영향을 미친다고 알려져 있다(Kleinman, 1997). 해당 지역에서 발생한 사건이라는 인식은, 동일 지역에 살고있는 사람들에게 당사자적 입장(행위자이면서 피해자)에서 사건을 이해하게 만들고, 타 지역 사람들에게는 사건에 대한 관찰자적 입장에서 사건을 해석하게 만든다(Jones

& Nisbett, 1972). 즉, 동일 지역 사람들은 사건에 대한 동질성을 갖게 되고, 다른 지역 사람들에게는 그 사건에 대한 해석에 따라 부정적 혹은 긍정적 인식을 형성하는 데 영향을 주어, 피해당사자가 아니더라도 그 지역 출신이라는 사실만으로도 그 사건의 당사자로 인식하는 암묵적 표상을 갖게 된다(배재창, 2017). 요컨대 제주도, 여수, 순천, 그리고 광주 지역 출신 사람들에게 제주4·3사건, 여수·순천10·19사건, 5·18민주화운동에 대한 정체성을 부여하여 그 사람들에게 대한 인상을 형성하게 된다는 것이다. 과거 제주4·3사건, 여수·순천10·19사건, 5·18민주화운동 모두 ‘반란사건’으로 불리었으며, 그 지역 사람들을 ‘반란군’, ‘빨갱이’, ‘폭도’로 생각하는 것이 이와 유사한 결과라고 할 수 있다. 이렇듯 개인의 낙인은 공동체 전체의 낙인으로 이어져, 해당 지역은 국가폭력 트라우마뿐 아니라 대한민국 사회로부터의 낙인으로 인한 고통을 감수해야만 했다.

### 보호체계의 상실

국가폭력 피해는 자기와 자신의 인생 목표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그 영향은 영구적인 특징을 가지고 있다(최윤경, 2017; Brewin & Holmes, 2003; Dunmore et al., 2001; Ehlers & Clark, 2000). 외상 사건으로 인해 개인이 가지고 있던 신념체계가 완전히 붕괴되고, 세상이 우호적이고 합리적일 것이라는 가정과 신념이 파괴되게 된다. 이를 Bulman(1989)은 ‘박살난 가정이론’이라고 하였다.

일반적인 폭력 사건들은 사건이 발생하게 되면 사건에 대해 경찰이나 검찰과 같은 수사기관이 수사를 하게 되고, 사건에 대한 혐의 유무를 밝혀내게 된다. 이 과정을 통해 피의

자에 대한 구속 및 기소를 결정하고 재판으로 형이 집행되게 된다(김용국, 2019). 그러나 국가폭력 사건의 경우는 이와 달랐다. 한 개인이 속해 있는 사회의 가장 큰 단위라고 할 수 있는 ‘국가는 국민을 보호하는 최대의 조직이며, 궁극적인 보호체계라고 할 수 있다. 그런데 공권력에 의해 고문을 당하고, 총상을 입었으며, 무차별적인 폭행을 당한 것은 더 이상 피해자들을 보호해 줄 수 있는 체계가 없음을 의미한다.

국가가 자신을 지켜줄 것이며, 자신이 국가의 일원(一員)이라는 신념이 깨어지게 되면서, 그 어디에도 소속되기 어려운 고립감을 경험하게 만들어, 국가폭력은 다양한 외상 사건들 중에서 가장 심각하고 다양한 문제들을 발생시킨다. 국가에 의해 조직적이고 의도적으로 자행된 폭력 행위인 ‘국가폭력’의 피해자들은 국가에 의해 보호받지 못해 결국 스스로를 보호해야만 했다.

#### **일반 트라우마에서 국가폭력 트라우마로의 변화과정**

트라우마 발생 이후의 공동체가 피해자를 수용하는 정도, 개인이 자신의 자원을 활용해서 트라우마에 적절하게 대처하는 것은 트라우마로 인한 후유증을 약화시키는 보호요인이 된다. 트라우마 피해자들이 자신의 경험을 수용하고 외상 사건에 새로운 의미를 부여할 경우, 회복과 성장을 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국가폭력 피해자들의 경험에서는 이러한 변화나 의미부여를 찾아보기 어려웠다. 범죄 피해나 재난의 경우 국가로부터 법적인 보호를 받게 되며, 공동체가 피해자에게 지지와 지원을 해주게 된다. 그러나 국가폭력의 경우 법적인 보호를 받을 수 없는 상태에 놓이게

되며, 사회적 낙인으로 인해 공동체로부터 고립되는 경험을 하게 된다. 피해자임에도 불구하고 피해사실을 밝히기 어렵고, 낙인으로 인해 국가의 반역자, 빨갱이로 살아가야 하는 상황이 반복되면서 국가폭력 경험은 지속적이고 만성적인 고통을 수반하는 트라우마로 변화하게 되는 것이다.

공동체와 사회가 국가폭력 사건의 처리 과정에 대해 우호적이지 않은 사회적 인식이나 편견이 피해자들의 사회적 고립을 심화시키고, 피해사실을 입증하는 과정에서 스스로가 아무 것도 할 수 없다는 무력감과 국가로부터 또다시 보호받지 못했다는 배신감과 좌절감으로 국가폭력에 대한 재외상을 경험하게 된다(강영신, 2015). 또한 피해신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아 자신과 가족의 무죄, 적절한 배상에 대한 기대 등이 무너지면서 진실규명에 대한 희망을 잃게 되며, 사건을 왜곡하는 가짜뉴스는 국가폭력의 재발에 대한 공포를 발생시키기도 한다.

트라우마를 회복하기 위한 개인의 노력은 일반 트라우마에서는 어느 정도 효과적일 수 있겠지만, 국가폭력 사건과 같은 사회구조적인 문제를 수반하고 있는 경우에는 개인의 노력에 의한 회복은 매우 어려운 것으로 보인다. 국가폭력 트라우마는 국가라는 거대 조직에 의한 의도적이고, 조직적이며, 지속적으로 행해지는 폭력 행위라고 할 수 있다. 국가폭력의 대상자가 되는 순간 선량한 국민이 아닌 사회로부터의 타자로 규정되어 법적인 제재가 정당해진 것이 되며, 폭력은 반복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이러한 무력감과 무망감이 저항에 대한 시도를 무의미하게 만들고 트라우마를 심화시키는 악순환을 발생시킨다. 이것이 국가폭력 사건을 경험한 피해자들이 초기 일반

트라우마와 유사한 상태에서 국가폭력 트라우마라는 복합적이고 만성적인 트라우마로 진행되게 하는 요인이라고 할 수 있다.

## 제언

지금까지의 국가폭력에 대한 진실규명 시도는 눈에 띄는 성과를 드러내지 못했다. 그 가장 큰 이유가 가해자 처벌이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이다. 가해자 처벌이 되지 않고, 피해자에 대한 배·보상을 통해서 국가와의 화해를 도모한 것은 진실규명이 피해자가 얼마나 피해를 입었는지를 조사하는 수준에 그치기 때문이다(김상숙, 2014). 진실규명에서 가해자가 처벌을 받는 것은 상징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다. 참여자들의 진술에서 그것의 의미는 ‘사건의 종결’과 ‘매듭지어짐’이었다. 가해의 주체가 처벌을 받는다는 것은 그 사건 자체가 인정된다는 것이니 더 이상 반박의 여지가 없다는 것이며, 그것은 자신의 명예가 보장되고, 보호받게 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러나 가해자의 사과와 처벌이 이루어진 국가폭력 사건은 대한민국 역사에서 찾아보기 힘들다. 진실과 화해는 우리나라 과거사 청산의 기본적인 취지였으며, 화해는 우리 사회 내부의 이념적 갈등 양상을 고려할 때 매우 중요한 가치임을 부정할 수 없다. 그러나 정의가 없는 진실로 인해 피해자들의 불만과 억울함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국가폭력 트라우마의 치유에서는 ‘왜 내게 이러한 사건이 일어났는가’에 대한 답을 찾아가는 것이 중요하며, 이 과정에서 사회적 지지는 필수적인 요소가 된다(최현정, 이훈진, 2016). 사회공동체가 공모한 침묵을 깨고, 피해자들의 이야기에 귀 기울이며, 국가폭력 사

실을 인식하여 정의를 회복하고자 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회복의 핵심 요소는 자신의 고통을 이해하는 것과 공동체로부터 수용 받는 경험이다.

일부 사람들은 오랜 세월이 지났으니 이제 그만 잊혀지길 바라거나, 언제 적 이야기를 아직도 하나며 귀찮은 내색을 하고, 이를 정치적 쟁점으로 이용하기도 한다. 국가폭력은 ‘기억의 해법’을 통해서 해결되어야만 한다(오수성, 2013). 참여자들이 자신의 경험이 잊혀지는 것을 두려워하는 이유는 국가폭력을 잊는 것은 그것이 다시 발생할 가능성이 있음을 의미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그들의 경험이 얼마나 고통스러웠는지를 생생하게 진술하면서,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후세에 반드시 알려야 한다고 설명했다. 책임자를 명확히 밝히고, 가해자가 처벌받는 것은 부끄러운 역사를 바로잡는 길이다. 이 원칙이 철저히 지켜졌을 때, 많은 피해자들은 그들의 경험을 다시 기억하고 애도할 수 있게 된다. 그리고 사회에서 진실을 수용할 때 피해자들은 다시 사회와 연결되는 경험을 하게 되며, 사회는 공동체성을 회복하게 된다.

본 연구 결과에서 국가폭력은 공동체를 통해 치유되기도 했고, 악화되기도 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가폭력은 개인의 경험으로 이루어진 공동체 트라우마라고 할 수 있다. 개인의 회복은 중요한 문제지만, 개인의 회복에만 초점을 맞춘 의학적인 접근, 정신건강 문제에만 국한하는 좁은 관점은 국가폭력과 이후의 환경 속에서 복잡하게 전개되는 다양한 삶의 문제를 간과하게 만든다. 그래서 국가폭력 트라우마를 치유하는 과정에는 개인의 회복에 이어 그 개인이 공동체로 돌아갈 수 있도록 사회적 관계를 만들어 주는 것이 반드시 필요

하다.

국가폭력은 피해당사자뿐 아니라 대한민국 국민이라는 정체성을 공유하는 모두의 관념과 생활 방식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국가폭력에 침묵하는 것은 국가폭력이 다시 발생했을 때 비슷한 방식으로 대처를 할 가능성을 갖게 됨을 의미한다. 진실을 드러내고, 피해자의 정체성을 보호하며, 공동체 안에서 회복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하는 것이 국가폭력 트라우마 치유에서 핵심적인 부분이다.

국가폭력 트라우마의 회복과 성장에서 공동체의 역할이 중요함을 고려하였을 때, 후속 연구에서는 공동체 구성원 간의 유대와 지원을 강화시킬 수 있는 국가 차원 혹은 지역사회 공동체 접근의 효과를 살펴보는 연구가 수행될 필요가 있다. 향후 개인에 대한 개입뿐 아니라 지역사회와 같은 공동체에 대한 개입의 성과를 파악하는 연구가 국가폭력 트라우마에 관한 추후 연구들에서 모색되어야 함을 제안하는 바이다.

본 연구가 국가폭력 피해자들의 경험을 이해하는 것은 물론, 진실규명과 과거사 청산, 그리고 공동체의 변화가 국가폭력 트라우마 치유에 중요함을 더 많은 연구자들과 함께 공유할 수 있기를 바란다.

### 참고문헌

강영신 (2015). 재판과정에서 고문생존자의 심리적 재외상. 광주트라우마센터 국제회의 발제.

권용철, 박종한 (1989). 노인용 한국판 Mini-mental State Examination(MMSE-K)의 표준화 연구. 제 1편: MMSE-K의 개발. 신경정신

의학, 28(1), 125-135.

김동춘. (1997). 국가폭력과 사회계약: 분단의 정치사회학. 한국산업사회학회: 경제와 사회, 36, 102-127.

김명희 (2014). 외상의 사회적 구성-한국전쟁 유가족들의 가족 트라우마와 복합적 과거 청산. 한국사회사학회: 사회와 역사, 101, 311-352.

김문선, 강문민서 (2017). 5·18민주화운동 참여자의 80년 5월 이후 삶과 증언치료 경험에 관한 현상학적 연구. 한국심리학회지: 문화 및 사회문제, 23(4), 451-473.

김상숙 (2014). 과거청산을 위한 역사적 진실 규명과 진실화해위원회 보고서-한국전쟁 전후 민간인학살 분야를 중심으로. 한국사회사학회: 사회와 역사, 104, 335-376.

김석웅 (2019). 국가폭력 가해자 불처벌이 유가족의 심리상태에 미치는 영향: 5·18민주화운동을 중심으로. 민주주의와 인권, 19(2), 37-73.

김왕배 (2014). '트라우마'의 치유과정에 대한 사회학적 탐색과 전망. 보건과 사회과학, 37, 5-24.

김용국 (2019). 생활법률 상식 사전. 위즈덤하우스.

박영주, 신행우 (2007). 사회적 폭력. 민주사회와 정책연구, 12, 294-320.

배재창 (2017). 광주·전남 출신 대학생이 5·18민주화운동에 대해 지니는 암묵적 표상. 한국심리학회지: 문화 및 사회문제, 23(4), 497-525.

변주나 (1996). 광주 5·18민주화운동 부상자들의 15년 후 후유증에 관한 연구: 일상생활 변화 및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를 중심으로. 한국문화인류학, 29(2), 221-259.

- 안규수 (2014). 손가락 총. 에세이스트.
- 엄찬호 (2013). 한국전쟁 전후 민간인학살에 대한 분노와 치유. *인문과학연구*, 36, 585-607.
- 여수지역사회연구소 (2012). 다시 쓰는 여순사건 보고서. 한국학술정보.
- 오수성 (2013). 국가폭력과 트라우마. *민주주의와 인권*, 13(1), 5-12.
- 오수성, 김석웅, 임형문, 박순영 (2016). 광주트라우마센터 발전방안 연구. 광주광역시.
- 오수성, 신현균, 조용범 (2006). 5·18피해자들의 만성 외상후 스트레스와 정신건강. *한국심리학회지: 임상*, 25(2), 59-75.
- 이영재 (2010). 과거사 피해보상에 대한 비판적 검토. *기억과 전망*, 23, 199-234.
- 이은경, 이현수 (2007). 정신분열병 환자의 시계그리기 검사(CDT) 양상. *Korean Journal of Clinical Psychology*, 26(2), 511-532.
- 이재승 (2003). 과거청산과 인권. *민주법학*, 24, 15-41.
- 이홍석, 이홍표, 권기준, 최윤경, 이재호 (2015). 무엇이 트라우마인가? 진화심리학적 측면에서 본 트라우마의 이해와 분류. *한국심리학회지: 일반*, 34(2), 565-598.
- 정문용, 김남희, 김대호, 김태석, 노대영, 민정아, 박주언, 소형석, 이경욱, 이병철, 정연은, 채정호, 최경숙, 최진희 (2010). 국가보훈대상자의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 치료전달체계 개발에 대한 연구. *국가보훈처*.
- 정호기 (2006). 국가폭력과 피해자보상-5·18민중항쟁의 인적 피해보상 제도를 중심으로. *민주주의와 인권*, 6(1), 113-145.
- 제주특별자치도 광역정신건강증진센터 (2016). 2016년 4·3 생존희생자 및 유족 심리지원사업 보고서.
- 조희연, 조현연 (2002). 국가폭력·민주주의 투쟁·희생에 대한 총론적 이해. 조희연(편), *국가폭력, 민주주의 투쟁, 그리고 희생*. 함께읽는책.
-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2009). 2009년 하반기 조사보고서. [https://www.jinsil.go.kr/fnt/nac/selectNoticeList.do;jsessionid=rC\\_VD4S1Y6c0wJFblDeUFEkWKuQXnEs5iaPyQ-Lg.jins\\_10?bbsId=BBSMSTR\\_0000000715](https://www.jinsil.go.kr/fnt/nac/selectNoticeList.do;jsessionid=rC_VD4S1Y6c0wJFblDeUFEkWKuQXnEs5iaPyQ-Lg.jins_10?bbsId=BBSMSTR_0000000715)
- 최상진, 한규석 (2000). 문화심리학적 연구방법론. *한국심리학회지: 사회 및 성격*, 14(2), 123-144.
- 최윤경 (2017). 외상후 성장에 대한 질적 연구. *한국심리학회지: 건강*, 22(1), 199-228.
- 최현정, 이훈진 (2016). 한국 현대사 고문 생존자의 내러티브 정체성 형성 과정. *한국계슈탈트상담연구*, 6, 29-58.
- 한홍구 (2018). 7일의 항명, 70년의 아픔. 다시 보는 여순사건과 한국 현대사. 여순항쟁 70주년 기념 학술심포지엄 기조 발제.
- 한홍구, 강은숙, 최현정, 오하린 (2012). 광주트라우마센터 설립을 위한 기초 연구. 평화박물관.
- 황석영 (1996). 광주 5월 민중항쟁일지: 5·18 그 삶과 죽음의 기록. 풀빛.
- 황혜리, 라영안 (2018). 네팔의 지진으로 인한 심리사회적 변화와 외상후 성장 요인에 관한 질적연구. *재활심리연구*, 25(2), 283-297.
- Alexander, J. C. (2007). 사회적 삶의 의미: 문화사회학 (박선웅 역). 한울아카데미. (원전은 2004년 출판).
- American Psychiatric Association. (2013). *Diagnostic and Statistical Manual (5th ed.)*. American

- Psychiatric Association.
- Amris, K. (2005). Chronic pain in survivors of torture. In Berliner P, Arenas JG, Haagenen JO (Ed.), *Torture and organised violence*, 31-69. Dansk Psykologisk Forlag.
- Barney, G., Glaser, Anselm, L., & Strauss. (2011). 근거이론의 발견: 질적 연구 전략 (이병식, 박상욱, 김사훈 역). 학지사. (원본 출판 1999년)
- Brewin, C. R., & Holmes, E. A. (2003). Psychological theories of posttraumatic stress disorder. *Clinical Psychology Review*, 23, 339-376.
- Creswell, J. W. (2015). 질적 연구방법론 - 다섯 가지 접근 - (조홍식, 정선욱, 김진숙, 권지선 공역). 학지사 (원본 출판 2012년)
- Danieli, Y. (2009). Massive trauma and the healing role of reparative justice. *Journal of Traumatic Stress*, 22, 351-357.
- Davidson, J. R. T., & Foa, E. B. (1991). Diagnostic issues in posttraumatic stress disorder: Considerations for the DSM-IV. *Journal of Abnormal Psychology*, 100, 346-355.
- Draucker, S. S., Martsolf, D. S., Ross, R., & Rusk, T. B. (2007). Theoretical sampling and category development in grounded theory. *Qualitative Health Research*, 17(8), 1137-1148.
- Dunmore, E., Clark, D. M., & Ehlers, A. (2001). A prospective investigation of the role of cognitive factors in persistent posttraumatic stress disorder (PTSD) after physical or sexual assault. *Behaviour Research and Therapy*, 39, 1063-1084.
- Ehlers, A., & Clark, D. M. (2000). A cognitive model of posttraumatic stress disorder. *Behaviour Research and Therapy*, 38, 319-345.
- Folstein, M., Folstein, S., & McHugh, P. (1975). "Mini-mental state": a practical method for gauging the cognitive state of patients for the clinician. *Journal of Psychiatry Research*, 12, 189-198.
- Heidi, Z., Alyssa, A. R., Alesia, H., Benjamin, E. S., & Dean, G. K. (2009). Losing a Loved One to Homicide: Prevalence and Mental Health Correlates in a national samples of young adults. *Journal of Trauma Stress*, 22(1), 20-27.
- Herman, J. (2012). 트라우마: 가정폭력에서 정치적 테러까지 (최현정 역). 열린책들. (원본 출판 1997년)
- Hertz, M. F., Prothrow-Stith, D., & Chery, C. (2005). Homicide survivors: Research and practice implications. *American Journal of Preventive Medicine*, 29, 288-295.
- Janoff-Bulman, R. (1989). Assumptive worlds and the stress of traumatic events: Applications of the schema construct. *Social Cognition*, 7(2), 113-136.
- Jones, E. E., & Nisbett, R. E. (1972). The actor and the observer: Divergent perceptions of the causes of behavior. In E. E. Jones, D. E. Kanouse, H. H. Kelley, R. E. Nisbett, S. Valins, & B. Weiner (Eds.), *Attribution: Perceiving the Causes of Behavior*. Morristown, General Learning Press.
- Kilpatrick, D. G., & Resnick, H. S. (1992). A description of the posttraumatic stress disorder field trial. In J.R.T. Davidson & E. B. Foa (Eds.), *Posttraumatic stress disorder: DSM-IV and beyond*, 243-250. American Psychiatric

- Press.
- Kira, I. A., Ashby, J. S., & Lewandowski, L. (2013). Advances in continuous traumatic stress theory: Traumatogenic dynamics and consequences of intergroup conflict: The Palestinian adolescent case. *Psychology, 4*, 396-409.
- Kleinman, A. (2002). 사회적 고통: 인간의 고통에 대한 사회학적, 의학적, 문화인류학적 접근 (안중설 역). 그린 비. (원본 출판 1997년)
- Lincoln, Y., & Guba, E. (1985). *Naturalistic Inquiry*. Beverly Hills, Sage.
- Morse, J. M. (2003). 근거이론 연구방법론 (신경림, 김미영 역). 현문사. (원본 출판 2001년)
- Schiraldi, G. (2000). *Posttraumatic stress disorder source book*. Ill.: McGraw-Hill.
- Schreiber, R. S., & Stern, P. N. (2001). The “how to” of grounded theory: Avoiding the pitfalls, In RS Schreiber & PN Stern (Eds.), *Using Grounded Theory in Nursing*, Springer Publishing Company.
- Stern, P. N. & Covan, E. K. (2003). 근거이론 연구방법론 (신경림, 김미영 역). 현문사. (원본 출판 2001년)
- Strauss, A., & Corbin, J. (1990). *Basics of Qualitative Research: Grounded Theory Procedures and Techniques*. Newbury Park, Sage.
- Strauss, A., & Corbin, J. (1998). *Basics of qualitative research: Techniques and procedures for developing grounded theory*. Thousand Oaks, Sage Publications, Ltd.

논문 투고일 : 2023. 09. 30

1 차 심사일 : 2023. 10. 30

게재 확정일 : 2023. 12. 08



## A Qualitative Study using the Grounded Theory on the Trauma Experiences of State Violence Victims

Seok-Woong Kim<sup>1)</sup>

Young-Shin Kang<sup>2)</sup>

<sup>1)</sup>Psychologist Group

<sup>2)</sup>Department of Psychology, Chonnam National University

This study analyzed the experiences of victims of state violence, discovered differences between state violence and general trauma, and proposed ways to help heal trauma. Participants were composed of state violence victims and their families in total, including 11 from the Jeju 43 Incident, 11 from the Yeosu · Sunchoen 10.19 Incident and 6 from May 18<sup>th</sup> Democratic Uprising. As a result of using the grounded theory to analyze data, a total of 170 concepts, 57 subcategories, and 20 categories were derived. The central phenomenon was direct damage caused by state violence. This included 'post-traumatic stress', 'social stigma', 'isolation from community', 'socio-economical issues' and 'family dissolution'. As a result of the process analysis, the participants experienced six phases: 'trauma', 'isolation', 'resistance', 'resignation', 'recovery', and 'growth.' Each phase is sequential but at the time mutually affect each other. Based on the results, this study verified the difference between state violence and general trauma, and emphasized social and cultural factors, such as community support, were important factors in healing state violence trauma. Besides, the implications and limitations as well as suggestions for future research were mentioned.

*Key words* : state violence, general trauma, community trauma, grounded theory